

上疏와 笏子の 형식 및 분류

이강욱*

1. 머리말
2. 上疏와 笏子の 형식
 - 1) 上疏의 형식
 - 2) 笏子の 형식
3. 上疏와 笏子の 분류
 - 1) 上疏의 분류
 - 2) 笏子の 분류
4. 맺음말

1. 머리말

上疏와 笏子は 신하들이 時政에 대한 의견이나 개인적인 소회 등을 국왕에게 진술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조선시대에 신하 또는 官司가 국왕에게 올리던 다양한 문서 중 上疏와 笏子は 개인의 의견을 국왕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라는 점에서 私的인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이러한 공통된 특징이 있으나, 그 유래와 형식 및 사용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上疏’의 원래 의미는 ‘疏를 올리다.’인데, ‘疏’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고유명사가 되었다. ‘疏’는 ‘소통하다[通]’라는 의미로, 이 문서는 중국 漢나라 때부터 아랫사람의 심정을 윗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였으며, 淸나라 때까지

*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 소장(<http://www.eundae.com>).

지 줄곧 사용되다가 中華民國이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¹⁾ 우리나라의 사료에서는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上大等 金思仁과 金良相이 각각 疏를 올려 時政에 대해 철저하게 논했다는 기록이 보인다.²⁾ 『三國史記』가 고려시대에 편찬되기는 하였으나, 그 안에 수록된 '疏'가 上疏를 의미한다면 신라시대부터 상소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다수의 疏 또는 上疏가 실려 있는 것을 통해 고려시대에도 상소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조선시대에는 太祖부터 純宗까지 전 시기에 걸쳐 상소가 사용되었다.

筓子是 중국 宋나라 때 사용하던 筓子 또는 筓에서 유래한 문서로, 筓는 '木簡'을 뜻하는 '札' 또는 '紮'과 같은 의미였다.⁴⁾ 宋나라 歐陽脩의 말을 참고해보면, 筓子 또는 筓가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신하나 관사가 국왕에게 상달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던 문서였고, 또 하나는 宋나라의 中書省과 樞密院이 하급기관에 지시할 때 사용하던 문서였다.⁵⁾ 전자는 唐나라 때 사용하던 榜子 또는 錄子에서 유래한 것으로 上達文書 중 하나였고, 후자는 唐나라 때 堂帖에서 유래한 것으로 관사끼리 주고받던 行移文書 중 하나였다.⁶⁾ 그중 中書省과 樞密院이 하급기관에 지시할 때 사용하던 筓子 또는 筓는 明나라 때 筓付로 바뀌어, 각 軍의 都督府가 각 衛의 指揮使에게, 六部가 각 衙門에, 布政司가 각 소속 아문에 공문을 보낼 때 사용하였다.⁷⁾ 筓付는 淸나라 때 다시 筓

1) 徐望之, 1988 『公牘通論』, 檔案出版社, 18면.

2)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 9 景德王 15년 2월 “十五年春二月, 上大等金思仁, 以比年災異屢見, 上疏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惠恭王 13년 4월 “上大等良相上疏, 極論時政.”

3) 『高麗史』 권13, 世家 13, 睿宗 4년 2월 “右諫議大夫李載上疏曰:‘……’”; 『高麗史節要』 권2, 成宗文懿大王 戊子 7年 “春二月, 左補闕李陽上疏:‘……’”

4) 徐望之, 위의 책, 24면.

5) 歐陽脩, 『歸田錄』 下卷 “唐人奏事, 非表非狀者, 謂之榜子, 亦謂之錄子, 今謂之筓子. 凡羣臣、百司上殿奏事, 兩制以上非時有所奏陳, 皆用筓子. 中書、樞密院事有不降宣勅者, 亦用筓子.”

6) 錢唐倪濤, 『六藝之一錄』 권261, 「古今書體」 93 方以智通雅 器用篇 書札 “筓子, 移牘也. 唐人奏事, 非表非狀者, 謂之筓子, 亦謂之錄子, 又謂之榜子. ……其後中書指揮事凡不降勅者, 曰筓子, 猶堂帖也.”; 許同莘, 1958 『公牘學史』, 中國人民大學印刷廳, 142-143면.

7) 徐望之, 위의 책, 24면.

라고 불리다가 中華民國이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⁸⁾

우리나라에서 차자를 사용한 기록은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기록된 차자는 3가지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 첫 번째는 고려 樞密院에서 다른 관사에 보내던 차자로, 行移文書의 일종이다.¹⁰⁾ 遼나라의 樞密院과 金나라에서 보낸 차자도 보인다.¹¹⁾ 두 번째는 驛馬 사용 및 使臣 왕래 등을 증명하기 위해 元나라 황제나 高麗 국왕이 발급하던 차자이다.¹²⁾ 이것은 황제나 국왕이 발급하던 下命文書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는 신하가 자기 소견을 국왕에게 아뢰는 때 올리던 차자이다.¹³⁾ 이것은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던 上達文書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笏子和 笏付가 분리되어 사용되었다. 이는 명나라 때부터 行移文書인 笏子를 笏付라고 구분해서 불렀던 영향으로 생각된다. 우선 笏付는 『태조실록』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명나라 禮部가 보낸 笏付와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笏付가 모두 보인다.¹⁴⁾ 태종 4년(1404)에는 각 아문이 자기보다 1등급 이상 낮은 아문에 공문을 보낼 때 笏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¹⁵⁾ 신하가

8) 위와 같음.

9) 카와니시 유야는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전기에도 笏付가 임명문서로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카와니시 유야, 2009 「고려말기 元 任命笏付 體式의 수용: 金天富笏付의 검토」 『고문서연구』 35, 121-123면.

10) 『高麗史』 권14, 世家 권14 睿宗 11年 8월 19일 “金將撒喝攻遼來遠、抱州二城幾陷、其統軍耶律寧欲帥衆而逃 王遣樞密院知奏事韓噉如招諭、寧以無王旨辭。噉如馳奏、王欲令樞密院具笏子送之。”

11) 『高麗史』 권9, 世家 9 文宗 29年 7월 13일 “遼東京兵馬都部署、奉樞密院笏子移牒、請治鴨江以東疆域。”; 권27, 世家 27 元宗 15年 2월 17일 “又正月初六日、到洪茶丘笏子 ”

12) 『高麗史』 권28, 世家 28 忠烈王 2年 윤3월 29일 “中書省移牒禁之、始立笏子色、應文等各受鋪馬笏子以行 ”; 권28, 世家 28 忠烈王 4年 7월 11일 “王上書中書省曰:‘……然小邦、曾奉省旨、國內往來之人、許國王自給笏子 自是來往使介、必給笏子、安有無笏子而亂行走遞者耶!’”; 권29, 世家 29 忠烈王 9年 3월 5일 “中郎將趙城等還自元、帝賜鋪馬笏子五道 ”

13) 『高麗史』 권75, 志 29 選舉 3 銓注 “十一年、密直提學白文寶上笏子曰:‘……’”; 『高麗史節要』 권13, 明宗 15年 9월 “平章事韓文俊以星變上笏子、詐乞退 不允 ”

14) 『태조실록』 권2, 1년 10월 22일 庚午 “知中樞院事趙胖回自京師、上率百官迎于宣義門外、胖奉傳禮部笏付曰:‘禮部笏付高麗國都評議使司。……’”

국왕에게 올리던 筓子는 『단종실록』과 『세조실록』에 ‘啓筓’ 또는 ‘筓子’라는 이름으로 보이기 시작한다.¹⁶⁾ 그러나 筓子를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일종으로 공식 인정한 시기는 성종 4년(1473)으로 보인다. 당시 大司憲 徐居正이 承旨와 宦官을 거쳐 구두로 국왕에게 아뢰는 것은 불편하므로 宋나라 제도에 따라 筓子를 사용하자고 건의하자 받아들여 시행하였다.¹⁷⁾

상소와 차자가 이처럼 오랜 기간 국왕과 신하 사이에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이었으므로 당시 士大夫들은 관직에 진출하거나 진출하지 않거나 상소와 차자의 문체와 격식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인 교양이 되었다. 이런 필요에 따라 상소와 차자의 문체와 격식을 모으거나 선배들의 유명한 상소와 차자를 두루 모아서 책으로 편찬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公車類覽』, 『公車類輯』, 『公車彙編』, 『疏筓可則』, 『章疏類纂』 등은 이런 필요에 따라 편찬된 책들이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이런 책들을 통해 상소와 차자에 대한 교양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⁸⁾

- 15) 『태종실록』 권7, 4년 4월 6일 丙子 “更定各品拜揖禮度及文字相通式 禮曹狀申:‘……各衙門, 於隔一以下衙門, 用筓付; 使臣及守令同’ ”
- 16) 『단종실록』 권6, 1년 6월 16일 辛丑 “皇甫仁啓曰:‘……’ 仍呈啓筓四道 ……遂下啓筓于兵曹, 皆從之.”; 『세조실록』 권28, 8년 5월 25일 己未 “傳旨曰:‘肅拜啓筓外大小公事, 承旨親授承傳宦官, 宦官稟旨, 親傳於承旨’ ”; 권34, 10년 8월 27일 戊申 “舊例武才都試開場日, 賜酒樂, 是日開場於訓鍊觀, 前所啓宣醞筓子, 日晏未下, 承政院復啓之 ……上曰:‘昨所啓筓子, 承傳宦官淹滯不啓, 且該司不待命而送酒肉, 皆不可也’ ”
- 17) 『성종실록』 권26, 4년 1월 21일 壬子 “大司憲徐居正啓曰:‘諸司啓事, 或用啓目, 或用單子, 例也 本府啓事, 則令下官進言, 或失本意, 有所增減, 又承旨以其言, 言于宦官, 使轉啓之, 未免有失誤. 考古制, 宋時有筓子, 簡易可行, 凡所欲言, 無不備載矣.’ 上問左右曰:‘此言何如?’ 領事曹錫文對曰:‘用筓子, 所懷盡達, 而後考亦有據矣’ 上曰:‘自今用筓子, 可也.’ ”; 권33, 4년 8월 4일 癸亥 “先是, 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疏, 至是乃下. 其疏曰:‘……若大臣欲奏公事, 每許三時經筵引見, 若非面對, 則用筓子, 非筓子, 則用單子, 勿使中官傳奏, 以防壅蔽’ ”; 권223, 19년 12월 24일 癸丑 “達城君徐居正卒 ……壬辰遷司憲府大司憲. 故事, 凡臺諫啓事者, 因承旨傳語, 中官轉達于上, 其間言語或有漏誤之患. 居正請用筓子, 凡所言皆得書啓, 下情畢達, 皆以爲便.”
- 1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조선시대의 상소와 차자를 모아서 서식과 내용에 따라 편찬한 책자들을 ‘上疏類’로 분류해놓았는데, ‘上疏類’에는 위에서 거론한 책자를 포함하여 총 41권이 분류되어 있다.

상소와 차자는 신하가 국왕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에 문서 출납을 담당했던 승정원에서 매일 작성한 『承政院日記』는 물론이고 조선왕조실록 및 『日省錄』에는 수많은 상소와 차자가 수록되어 있고, 개인의 文集에도 상소와 차자가 다수 실려 있다. 그 동안 상소와 차자에 대해서는 주로 역사학과와 한문학계가 연구를 주도하였다. 역사학계에서는 특정인의 상소나 특정시기의 상소와 당시 정치적 상황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¹⁹⁾ 반면 한문학계에서는 특정인의 상소와 차자에 나타난 修辭的 기교 및 文學的 특징에 주목하였다.²⁰⁾ 그 외에 語文學, 言論學, 教育學 등의 측면에서 상소의 특징을 연구한 성과가 있었다.²¹⁾ 그에 비해 고문서학의 입장에서 상소와 차자를 연구한 성과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상소와 차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및 상소와 차자에 대해 내리는 국왕의 批答에 대한 연구가 있는 정도였다.²²⁾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서로서의 상소와 차자가 각각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었으

-
- 19) 崔秀瓊, 1996 「趙浚의 上疏文에 나타난 政治改革思想」,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성희, 1992 「朝鮮 世宗代의 上疏에 관한 고찰」,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석규, 2007 「조선 초기 應旨上疏를 통해 본 成宗代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41; 이재빈, 2016 「정조 즉위 초 병신옥사의 처결과 절차적 지배의 강화: 심상운의 '온실수 상소' 사건 처벌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연주, 2014 「1880년대 전반 時務上疏의 개혁론과 갑신정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찬, 2013 「을사조약 반대상소와 5대신의 반박상소에 나타난 을사조약의 문제점」, 『한국근현대사연구』 64.
- 20) 정시열, 2012 「寒岡 鄭述의 上疏文 研究: 說君을 위한 修辭의 要諦」, 『한국학논집』 48; 이재원, 2004 「芝峯 이수광의 劄子 연구」, 『한문학논집』 22; 신두환, 2014 「妓生 楚月の 上疏文 研究」, 『漢文學報』 31.
- 21) 민현식, 2011 「甲子 上疏文의 텍스트언어학적 分析 研究」, 『어문연구』 39-3; 김하윤, 2015 「淸陰 金尙憲 上疏文의 특징과 설득전략」, 『한민족어문학』 70; 윤재환, 2016 「藥泉 南九萬 上疏文의 構成 原理와 展開 樣相: 『章疏彙攷』와 『疏劄可則』 所在 辭職上疏文을 中心으로」, 『한민족어문학』 74; 이규완, 2004 「상소에 인용된 고사의 설득 용도에 관한 연구: 태조~명종실록의 상소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4; 윤하나, 2009 「상소문을 활용한 화법 교육 방안 연구: '강경-계술 논쟁'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최승희, 1995 『韓國古文書研究』(증보판), 지식산업사, 146-148면; 심재권, 2008 「국왕 문서 '批答'의 연구」, 『고문서연구』 32, 67-92면; 노인환, 2015 「조선시대 비답(批答)의 문서 유형 연구」, 『고문서연구』 47, 25-51면.

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상소와 차자의 문서형식은 정조 때 편찬된 『典律通補』와 철종 때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公車類覽』에 실린 文書式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상소와 차자의 분류는 『銀臺便攷』와 『承政院日記』 및 『公車類覽』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上疏類’의 책자들을 참고하여 그 내용 또는 작성자를 중심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신 사이의 소통 수단이었던 상소와 차자가 어떤 기능을 하였고, 어떤 특징이 있었으며, 두 문서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인지를 밝혀보려고 한다.

2. 上疏와 笥子の 형식

1) 上疏의 형식

우리나라에서 상소를 사용한 시기는 오래되었으나 상소의 문서형식에 대해 규정한 문헌은 조선후기가 되어서야 보인다. 영조 때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百憲摠要』에 수록된 上疏式이 상소의 문서형식에 대한 최초의 규정으로 보인다.²³⁾ 그 뒤 具允明이 정조 때에 편찬한 『典律通補』에는 상소식이 더욱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²⁴⁾ 우선 『전율통보』에 수록된 상소의 작성 방식을 序頭, 本論, 末尾 등 3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百憲摠要』 「禮典」 用文字式 “上疏式【皮封外面右邊, 書上前[世子宮]開坼, 下段合衿處, 臣着銜謹封。】: 某大夫某【臣】姓名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言于主上殿下。伏以【臣】云云。【末行。】謹味死以聞。大年號某月某日, 【去加資】某職【臣】姓某着銜”

24)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上疏式【皮封, 書上前開[間字。]拆, 合襟處, 【臣】署名謹[間字]封, 連幅後面, 【臣】署名】具【平行。】銜【臣】姓名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二行。】言于尊【一行】號主上殿下 伏以云云。【臣】無任屏營祈懇之至, 謹味死以聞【二行。】。年【平行。】號幾年某月日【間字】, 單【間字】銜【臣】姓署名”

① 序頭

① 平行에 資級과 職銜을 모두 쓰고, ② 작은 글씨로 ‘臣’ 자를 쓰고 姓名을 적은 뒤에, ③ 참으로 황공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백 번 절하고서 ○○○○주상전하께 말을 올립니다.[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言于○○○○主上殿下]’라고 쓰되, ‘上’ 자는 줄을 바꾸어서 2항에 쓰고 ○○○○는 줄을 바꾸어서 1항에 쓰되 尊號를 쓴다.

② 本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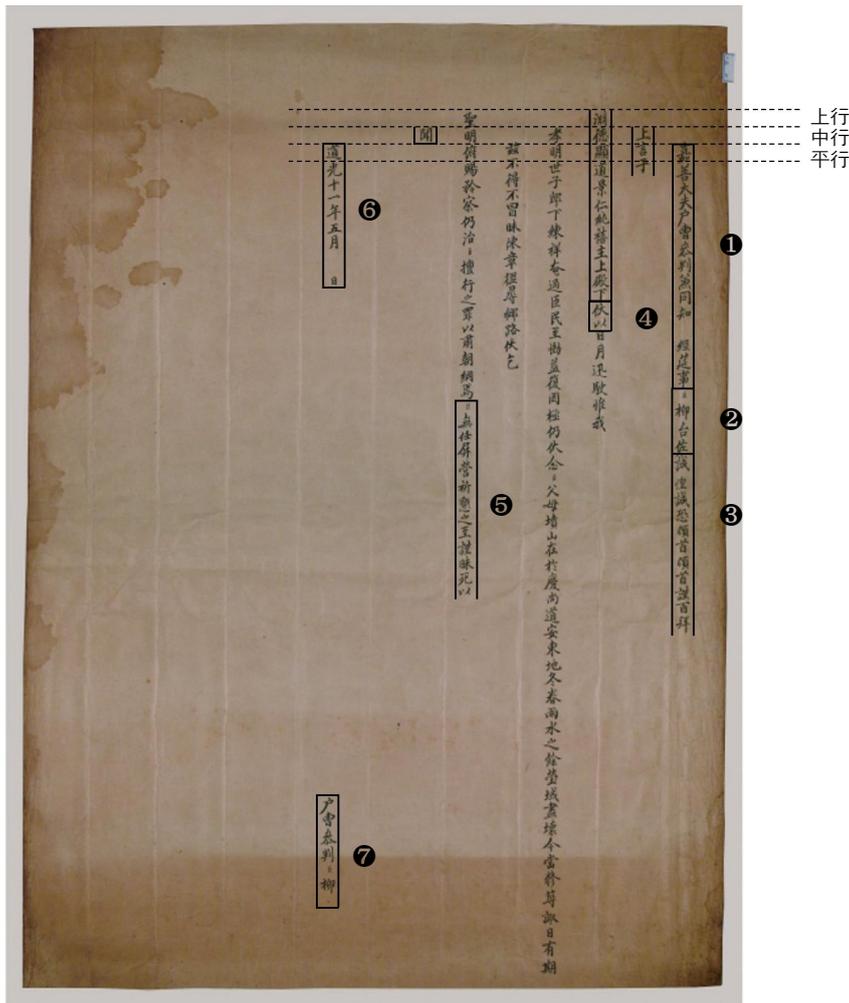
④ 삼가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伏以]로 시작하여 내용을 서술한다. ⑤ 본론의 結語는 작은 글씨로 ‘臣’ 자를 쓰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몹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서 아뢰입니다.[無任屏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라고 쓰되, ‘聞’ 자는 줄을 바꾸어서 2항에 쓴다.

③ 末尾

⑥ 줄을 바꾸어서 平行에 ‘年號, 몇 년 몇 월 일’을 쓰되 ‘日’ 자는 ‘月’ 자와의 사이를 띄어서 쓴다. ⑦ 이어서 單銜을 쓰되 ‘日’ 자와의 사이를 띄어서 쓰고, 작은 글씨로 ‘臣’ 자를 쓰고 姓을 쓴 뒤에 署名한다.

현재 남아있는 상소를 위에서 살펴본 문서형식에 맞추어 서두, 본론, 말미를 구분하여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이제 『전율통보』에 수록된 상소의 문서형식을 『公車類覽』에 수록된 상소의 문서형식과 비교하여 3가지 요소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상소의 실제 문서²⁵⁾

(1) 상소의 序頭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의 서두 중 ❶에는 상소를 올리는 사람의 신분을 기록하는 곳으로, 현직 관원은 資級과 職銜을 모두 썼다.²⁶⁾ 그중 직함은 本職과 兼職이

25)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1831년 5월 戶曹參判 柳台佐가 올린 상소이다.

26) 軍職에 제수된 경우에는 軍職을 썼다.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疏書及聯名書疏, 具書

있으면 본직을 먼저 쓰고 이어서 겸직을 썼으나, 經筵에 관한 사안으로 상소할 경우에는 겸직인 經筵의 직함을 먼저 쓰고 이어서 자급과 본직을 썼다.²⁷⁾ 예를 들면 ‘領經筵事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이라고 쓰는 것이다. 다만 玉堂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상소를 올릴 당시 관원의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당시의 신분에 따라 ①에 기록하는 어휘도 각각 달랐다. 즉 儒賢일 경우에는 ‘草莽臣’이라 기록하고, 죄를 지은 경우에는 ‘負罪臣’이라 기록하며, 喪中에 있을 경우에는 ‘草土臣’이라 기록하였다.²⁸⁾ 議政에 제수된 사람이 아직 謝恩肅拜를 행하기 전에 상소할 경우에는 ①에 前銜을 썼으나, 의정 외에 새로 자급을 받은 사람은 사은숙배를 행하기 전에 상소할지라도 새로 받은 자급을 썼다.²⁹⁾ 정조 10년(1786)에 司直 李文源이 資憲大夫에서 正憲大夫로 승진된 뒤 새로 받은 자급을 거두어달라고 청하면서 올린 상소에 새로 받은 자급인 ‘正憲大夫’라고 쓰지 않고 이전의 자급인 ‘資憲大夫’라고 썼다가 파직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³⁰⁾

신하들이 王世子에게 올리는 상소는 上書라 불렀고, 작성 방식도 약간씩 달랐다. 우선 ①과 ②에 기록하는 방식이나 어휘는 상소와 동일하였다.³¹⁾ 그러나 ③에 기록하는 내용 중 ‘百拜’는 ‘再拜’로, ‘上言’은 ‘上書’로, ‘○○○○主上殿下’는 ‘王世子邸下’로 바꾸어 기록하였다.³²⁾

資階及本、兼職、若軍職、則書軍銜 ”

27) 『公車類覽』「疏書劄凡例」“凡疏例、先書資階及本職、次書兼銜、而若以經筵事上疏、則先書經筵職銜、次書資職。【如領經筵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云云、知經筵事正憲大夫云云之類、是。劄子、則否。玉堂、則不在此例。】”

28) 『公車類覽』疏書劄凡例 “儒賢曰、‘草莽臣’；在罪中則曰、‘負罪臣’；在草土則曰、‘草土臣’ ”

29) 『公車類覽』「疏書劄凡例」“大官除拜後謝恩前上疏、書前銜、其餘新資人、雖謝恩前、書新資 ”

30) 『公車類覽』「疏書劄凡例」“按正廟丙午司直李文源請收新資疏、以前資書、上曰：‘非大官之新除、山林之抄選、重臣之疏、資是正憲、以前資憲書呈、固知出於冤痛之意、而屑越極矣、罷職’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7월 19일 “備忘記：‘……’”

31) 『典律通補』「別編」本朝文字式 “上書式【皮封、同上疏、而上前稱世子宮。】：具【平行。】銜【臣】姓名誠惶誠恐頓首頓首謹再拜上【二行】書于王【一行】世子邸下 伏以云云【臣無任以下、同上疏。】”

32) 『公車類覽』「疏書劄凡例」“上疏則曰：‘某官臣某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小朝、則曰再拜。】上言于【小朝、曰上書。】主上殿下【小朝、曰王世子邸下】、伏以 ”

垂簾聽政을 행할 때에는 大殿에게 올리는 상소와 垂簾聽政하는 東朝에게 올리는 상소 각 1통씩 모두 2통씩을 작성하였다.³³⁾ 그중 東朝에게 올리는 상소는 일반적으로 諺文으로 작성하였으며, 서두의 ①에도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와 달리 長銜을 쓰지 않고 短銜을 썼고, ②와 ③에는 투식적인 어휘를 쓰지 않고 ‘신 아 무개의 상소’라고만 썼다.³⁴⁾

(2) 상소의 本論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의 본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伏以]’로 시작하였다. 그 다음 頭辭가 쓰였는데, 頭辭는 모든 관원이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 頭辭란 국가에 哀事나 慶事가 있으면 상소의 본론 중 ④의 ‘伏以’ 이후에 애도하는 내용이나 경하하는 내용으로 서술하는 의례적인 말을 가리킨다.³⁵⁾ 이러한 두사는 원칙적으로 2품 이상만 쓸 수 있었고, 3품 이하의 국가에 애사나 경사가 있더라도 쓸 수가 없었다.³⁶⁾ 다만 六曹의 長官 및 大司諫과 大司成은 3품 이하라도 더러 두사를 쓸 수가 있었으나, 두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해당 달을 넘길 수 없었다.³⁷⁾ 정조 14년(1790)에 좌의정 蔡濟恭의 건의에 따라 경사가 있는 달까지만 두사를 쓸 수 있도록 두사의 사용기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었다.³⁸⁾ 그리고 국가에 경사가 있어 상소의 본론에 두사를 쓸 경우에는 ‘하늘의 도움’과 ‘국왕의 역대 조상의 도움’이 있어 이러한 경사를 맞이하

33)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垂簾時上疏, 凡二度【大殿一度, 東殿一度】”

34)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東朝, 例以諺書, 而只書某官【短銜, 如云議政府領議政】臣某上疏’ 上面平行始書‘伏以’ 伏以以下, 釋疏辭”

3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 자료를 분류한 ‘上疏類’ 중 崔漢綺가 편찬한 『章疏類纂』에는 상소의 頭辭와 結辭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문을 수록하였고, 찬자 미상의 『公車彙編』에는 상소의 頭辭를 사안에 따라 新元·彌月·元良·冊儲·代理·撤簾·大婚·尊號·寶齡·聖候平復·哀慶·行幸·陳慰로 나누고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였다.

36)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凡國有哀慶, 三品官以下無敢書頭辭。”

37)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至於六曹長官及諫長、泮長, 或書頭辭, 盡其月乃止。”

38)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按正廟庚戌蔡相濟恭奏: ‘凡有邦慶疏章之起頭稱賀, 古則卿宰爲之, 小官有不敢。近來繁文日勝, 邦慶後幾月, 起例稱賀如新, 事近應文, 語歸褻瀆。此後遇慶疏賀, 盡其月乃止之意, 定式何如?’ 上從之”;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10월 20일 “濟恭曰: ‘……’”

게 되었다고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³⁹⁾ 영조 42년(1766)에 正言 尹光禮가 李廷燮의 일과 관련하여 상소하면서 ‘삼가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하늘이 묵묵히 도우시어 성상께서 다시 건강해지셨습니다[伏以上天默佑聖候康復]’라고 두사를 썼는데, 영조가 ‘하늘의 도움’만 언급하고 ‘국왕의 역대 조상의 도움’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광례를 黑山島에 定配하도록 하였다.⁴⁰⁾ 이처럼 두사는 아무나 함부로 쓸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일반적인 관례를 지켜야 했다.

『公車類覽』에는 上疏·上書·劄子를 작성할 때 높여야 할 분을 언급할 경우에는 줄을 바꾸거나 글자 사이를 띄어서 적는 규정 등을 기록해놓았다.⁴¹⁾ 이를 上行, 中行, 平行으로 나누어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④ 上行 : 一行이라고도 하며, ‘최고로 높여야 할 분[極尊]’을 적는다. 예를 들면 ‘主上殿下’, ‘大王大妃殿’, ‘王大妃殿’, ‘中宮殿’, 국왕 조상의 陵寢, 明나라 등은 모두 上行에 쓴다. 上行 첫 머리에 ‘主上殿下’를 쓴 뒤에 또 ‘殿下’, ‘聖明’, ‘聖慈’, ‘崇嚴’, ‘天地父母’를 써야 할 경우에는 다시 줄을 바꾸어 上行에 쓰고, 그 이후에 또 써야 할 경우에는 줄을 바꾸지 않고 2자를 띄어서 쓰다가 말단에 이르러는 다시 줄을 바꾸어 上行에 쓴다. 다만 ‘大王大妃殿’과 ‘王大妃殿’은 출현할 때마다 모두 上行에 쓴다. 垂簾聽政할 때일지라도 반드시 ‘主上殿下’를 먼저 적고 난 뒤에 ‘大王大妃殿’

39) 『公車類覽』「疏書劄凡例」“凡邦有慶禮，上疏頭辭，并言惟天、惟祖宗，多有已例 ”

40) 『公車類覽』「疏書劄凡例」“按英廟丙戌，正言尹光禮，以李廷燮事上疏，稱頭辭云：‘伏以上天默佑聖候康復。’上以光禮疏首句稱慶之辭，但稱天祐，不稱祖宗，臣節都虧，命島配 ”；『승정원일기』영조 42년 6월 30일 “司諫院正言臣尹光禮疏曰：‘伏以 上天默佑，聖候康復，連行展禮，亟舉賀儀，繼以甘露知時，夙駕省農，慶溢區域，喜騰臣民，於休萬年，攢祝曷極！……’”

41) 『公車類覽』「疏書劄凡例」“疏書劄面有上、中、平行，上行書極尊，中行書次尊，平行與連書無異 如主上殿下、大王大妃殿【雖垂簾時，必先書主上殿下，次書大王大妃殿下】、王大妃殿、中宮殿、先廟陵寢【若連書列聖朝，則最尊位書上行，次尊位間二字書，若各行則皆書上行】及皇明，并書上行；園宮若儲慶宮、毓祥宮、嘉順宮，皆書中行；而至於顯隆園、惠慶宮，則書上行；世子宮、世子嬪宮，間二字書之。初頭主上殿下書上行後，又有書殿下或聖明或聖慈或崇嚴或天地父母，則亦書上行；其後，必間二字而書之；至末段，又書上行 若大王大妃殿、王大妃殿，逐行皆書上行，至如上言之上字、昧死以聞之聞字及劄子取進止之進字，皆書中行 間字之法，在四字內，則不必疊間，過四字後又間之，若紙縮用別行，則書中行似穩 ”

下'를 적는다. 역대 국왕의 조상을 열거할 경우에는 가장 윗분을 上行에 적고 그 다음 분부터는 줄을 바꾸지 않고 2자씩을 띄어서 기록하되, 각각 별행에 열거할 경우에는 모두 上行에 기록한다.

⑤ 中行 : 二行이라고도 하며, '가장 높여야 할 분 다음으로 높여야 할 분[次尊]'을 쓴다. 예를 들면 宮號인 '儲慶宮', '毓祥宮', '嘉順宮' 등은 모두 中行에 쓴다. 그러나 思悼世子 및 그 嬪의 사당인 '顯隆園'과 '惠慶宮'은 예외적으로 中行에 쓰지 않고 上行에 쓴다. 그 외에 '上言'의 '上' 자,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다[昧死以聞]'의 '聞' 자, 筭子의 본론 결사인 '수용 여부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取進止]'의 '進' 자도 모두 中行에 쓴다.

⑥ 平行 : 三行이라고도 하며, 上行과 中行에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平行에 쓴다. 줄은 바꾸지 않고 문장 중간에서 글자를 띄어 써서 높여야 할 분을 언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世子宮'과 '世子嬪宮'은 2자를 띄어 쓴다. 4글자 이내에서 연이어 글자를 띄어 써야 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띄어 쓰고 4글자가 넘은 뒤에 다시 띄어 쓴다. 만약 글자를 띄어 써야 하는데 쓸 공간이 부족해서 줄을 바꾸어 써야 할 경우에는 中行에 쓴다.

상소의 본론을 서술하고 나면 ⑤에 투식적인 結辭를 써서 마무리하였는데, 이 結辭는 상소를 올리는 사람의 신분과 상소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하였다. 『公車類覽』에는 상소의 내용에 따라 본론의 結辭를 분류해놓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上疏 結辭의 分類

分類	結辭
基本	① 신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몹시 간절히 기원합니다.[臣無任屏營祈懇之至]
言事	① 신은 절박하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몹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다.[臣無任激切屏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
辭職	① 신은 몹시 황공하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臣不勝惶恐震灼之至]
	② 신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몹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臣無任屏營隕越激切祈懇之至]
勉戒	① 신은 몹시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臣無任憂歎屏營之至]
	② 신은 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臣不勝隕越震惕之至]
自列	① 신은 몹시 황공하기 그지없는 마음으로 처벌해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臣不勝惶恐埃罪之至]

	② 신은 몹시 황공하고 떨리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臣無任惶怖震越怔忡凜慄之至]
言私	① 신은 성상을 우러러보며 몹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臣無任瞻天望雲痛迫祈懇之至]
	② 신은 구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몹시 간곡한 심정으로 기원합니다.[臣無任區區懇迫祈望之至]
國恤	① 신은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할 수 없으며 몹시 간절히 기원합니다.[臣無任泣血祈懇之至]
	② 신은 몹시 황공하고 애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臣無任惶恐哀懇之至]
草土	① 신은 몹시 감격스럽고 황공하며 격정스럽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臣不勝感激憂惶悶感震悼之至]
	② 신은 몹시 슬프고도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臣無任悲慕感激之至]
乞退	① 신은 성상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안절부절 안정하지 못하고 몹시 서글픈 심정입니다.[臣無任戀結宸極彷徨悵缺之至]
	② 신은 성상을 우러러보며 몹시 절박하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臣不勝瞻天望日激切屏營之至]

世子에게 올리는 上書의 본론도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전율통보』의 上書式에 의하면 上書의 본론은 ‘본론은 다음과 같습니다[伏以]’로 시작하고 결사는 상소와 동일하게 작성한다고 하였다.⁴²⁾ 『공거유람』에도 상서의 본론을 상소와 다른 형식으로 작성한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서의 본론을 시작하는 부분, 두사의 사용, 결사의 용례 등 ④와 ⑤에 작성하는 형식이 모두 상소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소에서 국왕을 나타내는 어휘인 ‘聖明’을 상서에서는 ‘離明’이나 ‘睿明’으로 바꾸어 쓰고, ‘聖’ 자는 ‘睿’ 자로, ‘啓’ 자는 ‘達’ 자로 바꾸어 썼다.⁴³⁾

垂簾聽政할 때 東朝에게 올리는 상소의 본론 부분은 작성 방식이 약간 달랐다. 우선 본론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④에 쓰는 ‘伏以’는 서두와 분리하여 줄을 바꾸어 平行에 쓰고, ‘伏以’ 이하의 본론은 본래의 상소를 언문으로 풀이하여 서술하였다.⁴⁴⁾ 그리고 ⑤에 쓰는 본론의 결사는 ‘매우 다행스럽기 그지없겠습니

42) 주) 31 참조.

43) 『公車類覽』 「疏書劄凡例」 “上書, 凡例不曰聖明, 而曰離明或睿明; 聖字, 代以睿字; 啓字, 代以達字。”

다[不勝幸甚]’라거나 ‘크게 바라마지 않습니다[不勝大願]’라고만 쓰고, ‘신은 ~ 금할 수 없습니다[臣無任]’라는 말 및 연호와 월일 등은 쓰지 않았다.⁴⁵⁾ 수렴청정하는 왕대비전이나 대왕대비전에게 올리는 상소는 언문으로 작성하고 상소의 형식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상소의 末尾

상소의 말미 중 ⑥에는 상소를 올리는 시점을 적고, ⑦에는 상소를 작성한 자의 신분을 다시 밝혔다. ⑥에 적는 大年號, 年, 月, 日은 본론의 결사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음 줄의 1줄을 비우고 새로운 줄의 平行에 쓰되, 대연호 및 年과 月은 이어서 쓰고 ‘日’ 자는 ‘月’ 자와 1자 사이를 두고 썼다.⁴⁶⁾ ⑥에는 이처럼 대연호를 쓰고 干支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儒賢이 올리는 상소에는 대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를 대신 쓰기도 하였다.⁴⁷⁾ 이는 性理學의 義理를 중시하는 儒賢에게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예우한 것이라고 하겠다. 현종 10년(1844)에 儒臣 洪直弼이 상소에 대연호를 쓰지 않고 올리자, 承旨 徐元淳이 규례를 위반하였다며 상소를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이때 大臣이 승지가 규례를 잘 몰라 이런 일이 생겼다고 오히려 승지의 과직을 청한 일도 있었다.⁴⁸⁾ ⑦에는 상소를 올리는 사람의 單銜, 臣, 姓을 차례로 적고 서명하되, 하단의 종이 끝에서 손가락 한 마디쯤 떨어진 지점에 서명이 올 수 있도록 ‘日’ 자와의 사이를 적당히 띄어 적었다.⁴⁹⁾ 聯名으로 올

44) 『公車類覽』「疏書筭凡例」“上面平行, 始書‘伏以’ 伏以以下, 釋疏辭 ”

45) 『公車類覽』「疏書筭凡例」“結辭只云:‘不勝幸甚。【或云不勝大願。】’, 無‘臣無任’以下及年月日式 ”

46) 『公車類覽』「疏書筭凡例」“年月日式, 原疏末段間一行平行書之, 而大年月, 則連書, 日字, 則間一字書之。”

47) 『公車類覽』「疏書筭凡例」“年月日式, 皆書大年號【不書某甲】, 儒賢上疏, 或不書大年號, 只書某甲。”

48) 『公車類覽』「疏書筭凡例」“按當宁甲辰, 儒臣洪直弼上疏, 不書大年號, 承旨徐元淳以違例退却, 大臣以承宣味例, 請施罷職之典。”

49) 『公車類覽』「疏書筭凡例」“短銜臣姓某【單銜。】, 距紙下面爲指尺許, 上距日字, 自當間之。”

리는 상소일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들의 單銜·臣·姓을 年·月·日 아래쪽에 적고 서명하되, 서열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거하였다.⁵⁰⁾

상소는 皮封에 넣어서 올렸는데, 피봉에 적는 글도 일정한 격식이 있었다. 『百憲摠要』와 『典律通補』의 상소식에 의하면 피봉에는 두 곳에 글을 적었다. 한 곳은 피봉의 겉면 오른쪽으로, '주상의 면전에서 개봉할 것[上前開拆]'이라고 쓰는 것인데, '前'자와 '開'자의 사이를 띄어 썼다. 또 한 곳은 피봉이 봉해지는 곳으로, 작은 글씨로 '臣'자를 쓴 뒤 서명하고 '謹封'이라고 쓰는데, 서명한 곳과의 사이를 띄어 '謹封'이라고 썼다.⁵¹⁾

2) 劄子の 형식

차자의 문서형식은 『經國大典』과 『百憲摠要』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정조 때 具允明이 편찬한 『典律通補』에 수록되어 있다. 먼저 『진율통보』에 수록된 차자의 작성 방식을 序頭, 本論, 末尾 등 3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²⁾

① 序頭

① 첫 번째 帖 첫째 줄의 平行에 單銜을 쓰고, ② 작은 글씨로 '臣'자를 쓰고 姓名을 적는다.

② 本論

③ 삼가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伏以]로 시작하여 내용을 서술한다. ④ 본론의

50) 『公車類覽』「疏書劄凡例」“聯名上疏, 年月日下短銜臣姓字下着【單銜】, 自左至右列書。【如左承旨臣姓某單銜, 左副承旨臣姓某單銜之類, 是。】”

51) 세자에게 올리는 上書의 피봉에는 '世子宮開拆'이라고 썼다. 『百憲摠要』「禮典」用文字式 “上疏式【皮封外面右邊, 書上前[世子宮]開拆, 下段合衿處, 臣着銜謹封】: 『典律通補』「別編」本朝文字式 “上疏式【皮封, 書上前開[間字]拆, 合襟處, [臣]署名謹[間字。]封, 連幅後面, [臣]署名】”: “上書式【皮封, 同上疏, 而上前稱世子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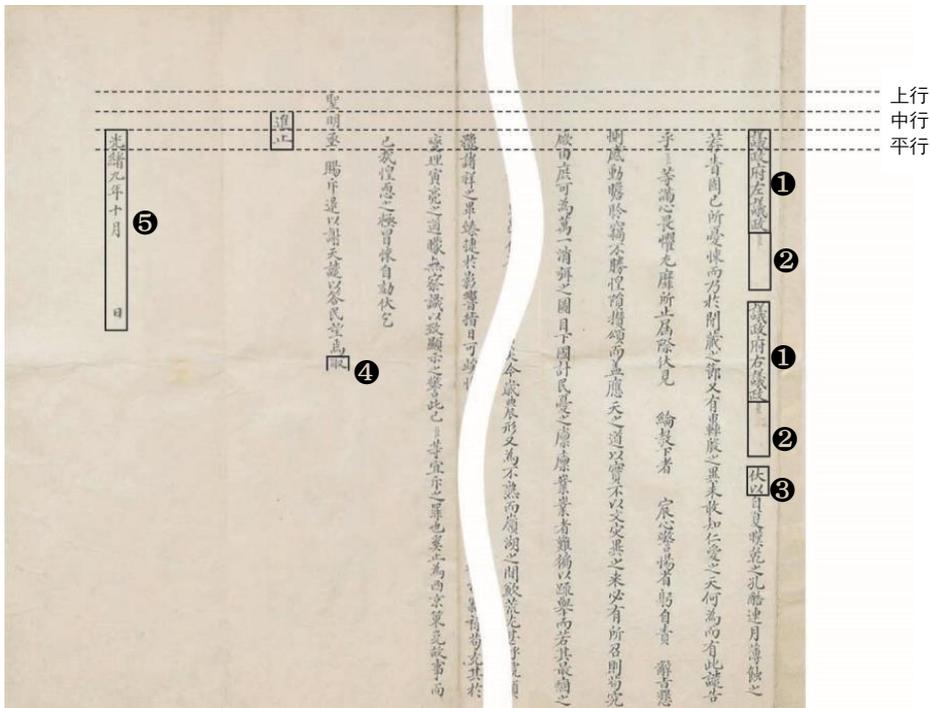
52) 『典律通補』「別編」本朝文字式 “劄子式【作帖】: ‘單【初帖初行平行。】銜【臣】姓名。伏以云云 取進【二行。】止 年【平行。】號幾年某月某日’”

結語는 ‘수용 여부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取進止]’라고 쓰되 ‘進’ 자는 줄을 바꾸어서 2항에 쓴다.

③ 末尾

⑤ 줄을 바꾸어서 平行에 ‘年號, 몇 년 몇 월 몇 일’을 쓴다.

현재 남아있는 차자를 위에서 살펴본 문서형식에 맞추어 서두, 본론, 말미를 구분하여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차자의 실제문서⁵³⁾

5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 소장 76692, 左議政·右議政筒子, 가로 144cm이고 세로 56cm이다.

이제 『典律通補』에 수록된 차자의 문서형식을 『公車類覽』에 수록된 차자의 문서형식과 비교하여 3가지 요소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劄子の 序頭

차자의 서두 중 ❶에는 單銜을 적는다. 이는 상소의 서두에 資級, 實職, 兼職을 모두 적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議政府領議政’처럼 實職 또는 軍職의 직함만 적는다.⁵⁴⁾ 經筵에 관한 일로 상소할 경우에는 겸직인 經筵廳의 직함을 먼저 쓴 뒤에 자급과 실직을 썼으나, 차자의 경우에는 경연에 관한 일로 차자를 올리더라도 예외 없이 單銜만 적었다.⁵⁵⁾ ❷에는 작은 글씨로 ‘臣’ 자를 적은 뒤에 성명을 적는다. 만약 대신들이 연명으로 차자를 올릴 경우에는 ❶과 ❷의 맨 앞에 현임 대신 1명의 단함과 성명을 대표로 적고, 그 뒤로는 전임 대신과 현임 대신을 서열에 따라 차례로 적었다.⁵⁶⁾ 연명으로 차자를 올리는 것은 大臣과 國舅 및 三司의 관원이 가능하였고, 단독으로 차자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대신만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그러나 정조 때 편찬된 『弘文館志』에는 옥당 1명이 避嫌한 臺諫을 處置해야할 상황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차자를 올릴 수 있다고 하였고, 고종 때 편찬된 『육전조례』에는 兩司의 長官인 대사헌과 대사간은 각각 독자적으로 차자를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⁵⁸⁾ 상소에는 성명을 적고 난 뒤에 의례적인 투식어를 사용하였으나, 차자에는 그런 투식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2) 劄子の 本論

차자의 본론 중 ❸에는 상소와 마찬가지로 ‘伏以’로 시작하여 서술할 내용을

54) 『公車類覽』「疏書劄凡例」“劄子則曰：‘某官【只書短銜，如議政府領議政之類，是】臣某，伏以’”
 55) 『公車類覽』「疏書劄凡例」“凡疏例，先書資階及本職，次書兼銜，而若以經筵事上疏，則先書經筵職銜，次書資職。【如領經筵事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云云、知經筵事正憲大夫云云之類，是。劄子，則否。玉堂，則不在此例。】”
 56) 『公車類覽』「疏書劄凡例」“時原任大臣聯劄，必以時相一員爲首，而其下，則時原任視座次書”
 57) 『公車類覽』「疏書劄凡例」“劄子，大臣、國舅及三司外，無得聯劄，至於獨劄，三司古或有之，今則大臣外，其例罕有” 大臣에는 時任大臣과 原任大臣이 모두 포함된다.
 58) 정조대 『弘文館志』「館規」제4 疏劄 “處置外，不得獨劄”；『六典條例』「吏典」司憲府 臺體 “長官獨劄，而下位毋得爲之。【兩司聯劄，則雖非長官，勿拘】”

기록하였다.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대신과 국구가 올리는 차자에는 頭辭를 사용할 수가 있었으나 三司의 관원은 두사를 사용할 수 없었다.⁵⁹⁾ 仁元王后의 삼년상을 마치고 貞純王后와의 嘉禮를 앞둔 영조에게 副提學 金時燦이 차자를 올리면서 위로하는 말과 경하하는 말을 두사로 적지 않았다가 黑山島에 投畀하라는 처벌을 받았는데, 玉堂들이 연명 차자를 올려 차자를 작성하는 규정은 上疏나 上書와 다르고 三司 관원의 체모는 大臣과 다르기 때문에 두사를 적지 않은 것이라고 변호하였다.⁶⁰⁾ 『승정원일기』에도 차자에 두사가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보인다.⁶¹⁾ 본론을 서술하다가 높여야 할 분을 언급해야 할 경우에는 줄을 바꾸거나 글자 사이를 띄어 적는 규정은 상소나 상서와 동일하였다.

④에 적는 본론의 結辭는 상소에 비해 간략하였다. 상소의 본론 결사는 대부분 ‘신이 ~하기 그지없습니다[臣無任~]’라고 적은 뒤에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謹昧死以聞]’라고 적었으나, 차자의 본론 결사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이 ~하기 그지없습니다[臣無任~]’라는 내용을 적지 않고 곧바로 ‘수용 여부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取進止]’라고만 적었다.⁶²⁾ 이때 ‘進’자는 줄을 바꾸어 中行에 썼다.⁶³⁾

59)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筭例若值邦慶，則大臣及國舅或有頭辭稱慶【如請收濫賞筭】，而三司，則不在此例。”

60)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按英廟己卯副學金時燦獨筭不及哀慶，上曰：‘不肖不孝忍過三年，渠亦侍從，位在下大夫，無一慰君之語，目下邦禮，何暇言哉!’ 謂筭首不言閔制及大婚也。玉堂匡救筭曰：‘殷禮制訖，周梁禮成，國人均忭，彼時燦，豈獨無哀慶之心! 良以筭子之規不同書疏，三司之體又<+異>大官，除非君德、朝政，例不敢猥及情禮云云’”；『승정원일기』 영조 35년 윤6월 13일 “上命讀筭子 心源讀至朝廷之上太半姻戚之句，上曰：‘……’”；영조 35년 윤6월 14일 “校理鄭遠達·南綺老、副校理任琰·元義孫、修撰鄭晚淳、副修撰李福源等筭曰：‘……’” < >는 필자가 校勘한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는 闕字의 추가, ‘-’는 衍字의 삭제, ‘→’는 誤字의 수정을 나타낸다.

61) 『승정원일기』 순조 11년 3월 29일 “相休曰：‘前者民弊傳教，有道、守臣如筭子樣製上之命，而華留送書於本院曰，‘頭辭及尾語，未知如何爲之方合於筭子樣乎’云云。臣意，則格例，自上指一下教，然後可無眩於舉行之慮矣’”

62)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結辭云：‘取進止’【末段或云：‘臣無任云云’仍結辭以‘取進止’其例少】”

63)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至如上言之上字、昧死以聞之聞字及筭子取進止之進字，皆書中行”

(3) 笥子の 末尾

차자의 말미에는 年號+年과 월일만 적고 상소와는 달리 차자를 올리는 사람의 單銜, 臣, 姓, 署名 등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소에 적는 年號+年과 월일은 본론의 결사가 끝나는 부분에서 1줄을 비우고 새로운 줄의 平行에 쓰지만, 차자는 作帖을 하기 때문에 상소와 달랐다.⁶⁴⁾ 즉 차자는 본론의 결사를 서술한 帖에 한 글자만 기록되었더라도 그 첩을 비워두고 그 옆 별도의 첩에 年號+年과 월일을 쓰되, 반드시 그 첩의 한 가운데 平行에 썼다.⁶⁵⁾

이상으로 차자의 문서형식을 살펴보았다. 그중 차자가 상소와 다른 점을 서두, 본론, 말미로 나누어 정리해보기로 한다. 상소의 서두에는 長銜을 쓰고 이어서 의례적인 투식어를 사용하였으나, 차자의 서두에는 單銜을 쓰고 의례적인 투식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상소의 본론 결사에는 대부분 ‘신이 ~하기 그지없습니다[臣無任~]’라고 적은 뒤에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謹昧死以聞]’라고 적었으나, 차자의 본론 결사는 대부분 ‘신이 ~하기 그지없습니다[臣無任~]’라는 내용을 적지 않고 곧바로 ‘수용 여부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取進止]’라고 적었다. 상소의 말미에는 年號+年과 월일, 單銜, 臣, 姓, 署名을 기록하였으나, 차자의 말미에는 年號+年과 월일만 적었다. 그리고 말미에 적는 위치도 상소는 본론의 결사가 끝나는 부분에서 1줄을 비우고 새로운 줄의 平行에 썼지만, 차자는 作帖하기 때문에 본론의 결사가 끝나는 帖과 구별하여 별도의 첩에 썼다.

3. 上疏와 笥子の 분류

상소와 차자는 이를 올리는 사람이나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상소와

64) 作帖이란 문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서 병풍처럼 펼쳐지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周帖은 문서의 뒤쪽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서 앞으로 감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전율통보』와 『公車類覽』 등에는 상소를 어떤 방식으로 접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나 현재 남아있는 상소의 접힌 자국을 보면 周帖 형식으로 접었던 것으로 보인다.

65) 『公車類覽』「疏書笥凡例」“笥子紙, 皆用帖子, 故末段雖書隻字, 年月日式, 當書別帖, 而必於當中平行, 無官銜書式 ”

차자를 올리는 사람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올리는 사람이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獨疏·獨筭과 聯疏·聯筭로 나눌 수 있다. 獨疏와 獨筭은 1명이 단독으로 올리는 상소와 차자를 가리키고, 聯疏와 聯筭은 2명 이상이 聯名으로 올리는 상소와 차자를 가리킨다.⁶⁶⁾ 상소와 차자를 올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資級과 職名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각 개인의 이름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上疏類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분류를 따르고 있다. 상소와 차자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일 경우에는 이처럼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으나, 다양한 사람이 올릴 수 있는 문서라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겠다.

상소와 차자를 내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상소와 차자에서 거론할 수 있는 사안이 다양한 만큼 그 분류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上疏類 중 崔漢綺가 편찬한 『章疏類纂』에는 상소의 내용에 따라 頭辭·敘歷·情勢·才品·承批·除拜·感恩·不稱·難進·辭職·結辭·言事·疾病·讓賢·勉學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은대편고』에는 상소와 차자를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따라 ‘辭職疏’, ‘親病疏’, ‘乞郡疏’, ‘言事疏’, ‘執藝疏’ 등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⁶⁷⁾ 이러한 분류는 상소와 차자의 내용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66) 『승정원일기』 정조 6년 7월 15일 “上曰:‘卿似未及諦聽予教矣 向日諸大臣聯筭時, 卿爲獨筭, 故心以爲訝矣.’”; 정조 12년 7월 25일 “上曰:‘玉堂事, 亦可慨然矣。初則聯疏, 後則獨疏, 而後疏, 則比初疏倍多矣 蓋儒生袖出笏記, 至有承宣之請推, 而聞其中有萬經理事云, 故使之出去呈疏爲教矣 至於玉堂之聯疏, 則豈不可怪乎! 此是聽聞之可駭, 故已責承宣之捧納, 而且其獨疏, 則改其初疏之頭辭, 而或爲聯疏或爲獨疏者, 誠是後弊之所關矣’ 致仁曰: ‘承宣旣已請罪, 則玉堂之又爲聯疏, 誠過矣.’”; 정조 20년 6월 22일 “上曰:‘右承旨, 昨日傳教頒布時, 同在院中, 而晚始出去, 何爲獨疏?’ 肇源曰:‘以堤防之不嚴, 諸承旨同爲憂歎, 聯疏之議, 發而復止矣, 果於出去後, 獨疏矣’”

67) 『은대편고』 「工房攷」 疏章 “凡上疏, 若值齋日, 則不得捧入。【三司言事疏, 值齋日, 則留院, 抄要語入啓。】…… ○ 在外堂下三司之臣, 連呈縣道辭職疏者, 切勿捧入 ……承旨、玉堂外乞郡之疏, 勿許捧入【丁巳八月三日下教】 ○ 臺諫親病疏, 一司一人往還後捧入, 勿爲疊捧 …… ○ 金吾堂上執藝上疏到院, 則雖值齋日, 微稟入啓 ○ 求言時外前啣疏, 正宗朝有禁令, 純宗癸亥, 因左議政徐龍輔所啓, 特許勿禁, 追因丙子下教, 復有禁令, 若有言事, 則請罪捧入。…… ○ 館學疏, 雖值齋日, 入稟捧入”

있겠다. 상소와 차자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문서들과 달리 신하가 개인적인 사정을 국왕에게 아뢰는 때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국가의 정책이나 국왕의 조치 등 공적인 사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아뢰는 때 상소와 차자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처지를 호소하거나 남으로부터 탄핵 받은 일에 대해 해명하는 등 사적인 사안에 대해 아뢰는 때도 상소와 차자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상소와 차자의 내용은 크게 私的인 上疏·劄子和 公的인 上疏·劄子로 나눌 수가 있다.⁶⁸⁾

상소와 차자는 주체에 따르거나 내용에 따르거나 둘 다 통일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와 차자는 문서의 형식 및 사용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중복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상소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되, 상소를 올리는 주체 및 방식에 따른 분류를 일부 포함하기로 하겠다. 차자는 상소와 달리 사용하는 사람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차자를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하겠다. 차자의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劄子は 大臣과 國舅 및 三司 이외는 聯劄을 올릴 수 없으며, 獨劄의 경우는 三司도 옛날에는 더러 올렸으나 지금은 大臣 이외에는 그러한 예가 드물다.⁶⁹⁾

위의 말을 정리하면, 聯劄은 大臣과 國舅 및 臺諫과 玉堂만이 올릴 수 있고, 獨劄은 예전에는 臺諫과 玉堂도 더러 올렸으나 이제는 대부분 大臣만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⁷⁰⁾ 이것은 聯劄과 獨劄을 올릴 수 있는 신하들의 범위에 대해 구

68) 상소와 차자를 私的인 것과 公的인 것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私的이거나 公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상소와 차자의 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상소와 차자의 특성상 실제로는 私的인 내용과 公的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69) 『公車類覽』「疏書劄凡例」“劄子, 大臣、國舅及三司外, 無得聯劄, 至於獨劄, 三司古或有之, 今則大臣外, 其例罕有 ”

70) 『弘文館志』에서는 玉堂이 避嫌한 臺諫을 處置할 때에는 獨劄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고, 『육전조례』에서는 大司憲과 大司諫도 獨劄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弘文館志』「館規」제4 疏劄 “處置外, 不得獨劄 ”; 『六典條例』「吏典」 司憲府 臺體 “長官獨劄, 而下位毋得爲之【兩司聯劄, 則雖非長官, 勿拘】”

분해서 말한 것이지만, 聯筭나 獨筭를 막론하고 筭子を 올릴 수 있는 관원은 사실상 大臣과 國舅, 臺諫과 玉堂으로 제한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현직 관원은 물론이고 전직 관원과 儒賢·儒生까지 광범위한 것과 비교해볼 때, 차자를 올릴 수 있는 관원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차자를 올린 관원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선전기와 후기의 국왕 중 재위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중종과 영조의 실록에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차자를 사용자별로 분류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중종실록』과 『영조실록』에 기록된 筭子の 분류

分類	中宗實錄	英祖實錄	總計
大臣의 筭子	1	31	32
玉堂의 筭子	192	11	203
臺諫의 筭子	186	3	189
其他 筭子	13	2	15
總計	392	47	439

위의 표에 의하면 차자를 올릴 수 있는 관원은 거의 大臣, 玉堂, 臺諫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예외적으로 차자를 올린 관원이 일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자는 차자를 올릴 수 있는 관원의 신분에 따라 분류해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上疏의 분류

(1) 私的인 上疏

① 辭職疏

辭職疏는 신하가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으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상소의 대부분은 遞差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모든 상소는 辭職疏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辭職疏라고 한 것은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상소의 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상소에서 주로 다른 사안을 언급하고 말미에 의례적 또는 형식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상소는 辭職疏라고 하지 않

는다. 사직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질병 및 무능, 부모의 질병 및 간호, 다른 관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일이나 모종의 사건 등으로 인해 관직을 맡을 수 없는 혐의 등이 있었다. 그중 자신의 질병을 이유로 올린 辭職疏는 身病疏라고도 부르고, 부모의 질병을 이유로 올린 辭職疏는 親病疏라고도 불렀다. 다른 관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았거나 모종의 사건 등으로 인해 관직을 맡을 수 없는 혐의를 내세우며 올린 辭職疏는 引嫌疏라고도 불렀는데, 인혐소는 사직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辭職疏는 현직에 있는 신하만이 올릴 수가 있었는데, 辭職疏를 올리는 데에도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다. 첫째, 1개의 관사에서 2통의 辭職疏를 동시에 바칠 수 없었다.⁷¹⁾ 이것은 각 관사에서 여러 관원이 한꺼번에 사직함으로써 생기는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外職인 관찰사에 補任된 자가 辭職疏를 올리면, 승정원에서 推考하기를 청하고 상소를 入啓하였다.⁷²⁾ 補任의 징계를 받은 신하가 사직해버리면 징계의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辭職疏를 올리지 못하게 규제한 것이다. 셋째, 휴가를 받아 지방에 내려간 신하는 縣과 道를 통해 辭職疏를 올릴 수가 없었고, 지방에 있는 三司의 당하관은 縣과 道를 통해서 연이어 辭職疏를 올릴 수가 없었다.⁷³⁾ 이것은 지방에 있는 신하가 편의대로 사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에 복귀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② 致仕疏

致仕疏는 관원이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政界에서 은퇴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辭職疏가 관원이 당시 맡고 있던 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내용으로 올리는 일시적인 퇴직 상소라면, 致仕疏는 나이 많은 관원이 당시 맡고

71)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辭職上疏, 一司不得兩呈 ”

72)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凡補外藩臣, 若辭職上疏, 則請推入啓.”

73)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在外堂下三司之臣, 連呈縣道辭職疏者, 切勿捧入。【壬戌二月二十七日下教。】”; 「通攷」 狀啓 “丙辰十一月二十九日, 受由下鄉人, 毋得縣道辭職事, 下教 ”

있던 모든 관직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직을 맡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올리는 영구적인 퇴직 상소라고 하겠다. ‘致仕’는 『春秋公羊傳』에 나오는 말로, 孔子의 제자 閔子騫이 삼년상을 치르는 중에 腰經을 찬 상태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은 人情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난 내용이 보인다.⁷⁴⁾ 그러나 이때 보이는 致仕를 政界에서 은퇴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었다. 致仕가 나이와 연결되어 政界에서 은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禮記』에서 “大夫는 70세가 되면 직무를 돌려주고 물러난다. 만약 국왕이 사직을 허락할 수 없으면 반드시 几杖을 하사한다.”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하였다.⁷⁵⁾

『禮記』의 구절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의 관원들이 벼슬에서 은퇴하는 나이를 보통 70세로 보았다. 그에 따라 『경국대전』에서는 1품 관원으로서 70세 이상이지만 국가에서 필요하여 致仕를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几杖을 하사하도록 하였고, 당상관으로서 致仕한 자에게는 예조 또는 해당 신하가 거주하는 고을에서 매달 술과 고기를 전해주도록 하였다.⁷⁶⁾ 致仕疏에 대해서는 국왕이 아뢴 대로 시행하겠다고 허락하면, 승정원에서는 傳旨를 작성하지 않고 곧바로 치사한 관원의 관직에 따라 이조 또는 병조에 통지하였다.⁷⁷⁾ 致仕한 사람을 奉朝賀에 제수하면 致仕할 때의 官職名에 ‘致仕奉朝賀’를 붙여 불렀으며, 치사할 때의 관직에 따라 이조 또는 병조가 告身과 祿牌를 발급하였다.⁷⁸⁾

74) 『春秋公羊傳』 「宣公」 1년 “已練, 可以弁冕, 服金革之事 君使之, 非也; 臣行之, 禮也. 閔子要經而服事, 既而曰: ‘若此乎, 古之道不即人心.’ 退而致仕, 孔子蓋善之也.”

75) 『禮記』 「曲禮上」 “大夫, 七十而致事. 若不得謝, 則必賜之几杖 ”

76) 『經國大典』 「禮典」, 惠恤 “官至一品年七十以上係國家重輕不得致仕者, 本曹啓聞, 賜几杖, ○堂上官致仕者及功臣父母·妻, 堂上官妻年七十以上者, 本曹、本邑月致酒肉.”

77)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致仕上疏, 依施命下, 則不捧傳旨, 分付該曹【戊戌正月初八日】”

78) 『典律通補』 「吏典」, 權設職 “奉朝賀【『經』○無定數 ○致仕後付. 『增』○致仕時, 東班職, 則本曹, 西班職及軍銜, 則兵曹授告身 『經』『補』】”; 京官格式 “奉朝賀, 以致仕時職, 稱某職[封君人, 則某職某君.]致仕奉朝賀 『經』『補』】”; 「戶典」, 祿科 “實職、軍銜四等祿【大典法, 四孟朔, 頒等祿 『補』】, 分作每朔散料【『續』○吏、兵曹, 四孟朔給祿牌, 仲、季朔受職, 則隨給. 『經』『增』○奉朝賀, 以致仕時或實職或軍<作→職>, 吏、兵曹分授 『經』『補』】, 前月, 自廣興倉排日頒賜.”

③ 乞郡疏

乞郡疏는 중앙관사의 관원이 시골에 있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고을 수령에 제수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중앙관사의 관원이乞郡한 기록은 조선시대의 사료뿐만 아니라 『고려사』에도 보인다. 고려 仁宗 때翰林院의 관원이던 金守雌가 연로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걸군하여 禮州防禦使에 제수된 것과 우왕 13년(1387)에 成均館祭酒이던 鄭道傳이 걸군하여 南陽府使에 제수된 것이 그 예이다.⁷⁹⁾ 조선전기에는 集賢殿과 世子侍講院의 관원 등侍從臣이 주로 乞郡하였다.⁸⁰⁾ 조선후기에도 玉堂, 臺諫, 承旨 등 시종신이 주로 걸군하였으며, 2품의 宰臣은 원래 乞郡할 수 없었으나 예외적으로 허락한 경우도 있었다.⁸¹⁾ 또 侍從臣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에는 乞郡을 허락하지 않았고, 부모 중 한 사람만 생존하고 봉양할 형제가 없는 경우에만 乞郡할 수 있었다.⁸²⁾ 조선후기에는 乞郡할 수 있는 侍從臣의 범위를 점차 제한하였

79) 『高麗史』 권98, 列傳 11 諸臣 “金守雌:遷直翰林院, 未幾有疾, 不樂在近職, 又以母老乞郡, 出爲禮州防禦使, 卒.”; 권119, 列傳 32 諸臣 “鄭道傳:陞成均祭酒, 乞郡, 出守南陽府”; 『태조실록』 권14, 7년 8월 26일 己巳 “道傳, 字宗之, 號三峯, 安東奉化人, 刑部尙書云敬之子 ……丁卯, 乞郡爲南陽府使.”

80) 『세종실록』 권63, 16년 2월 6일 甲寅 “賜米豆各十石, 醯醬各一甕于集賢殿直提學金墩之母 墩曾入集賢殿, 久侍經筵, 以老母居全羅康津縣, 乞郡歸養, 授長興都護府使, 未滿其期, 以本殿直提學召還, 仍命率母來京, 故乃有是賜焉”; 『성종실록』 권178, 16년 7월 8일 丙辰 “行副護軍金之慶卒. ……甲戌超授知司諫院事, 遷集賢殿直提學. 時, 世祖封懷簡王爲世子, 選爲右輔德, 以親老乞郡, 拜星州牧使 ”

81) 『광해군일기』 권13, 2년 12월 25일 丙申 “命以承政院右副承旨宋錫慶拜羅州牧使 宋錫慶以舊日僚屬, 有上寵眷, 曾於先朝, 久在春坊故也. 是時, 以右副承旨, 在禁直, 乃上疏乞郡爲養也. 疏上, 答曰:‘省疏具悉至情 當令從願.’ 因特除羅州牧使.”; 권15, 3년 7월 6일 癸卯 “正言李德一上疏乞郡 答曰:‘省疏情理切迫 當令遂願’ 仍傳曰:‘益山郡守除授 【德一, 希奮之妹夫也, 有人望. 是時, 柳家子弟登第者, 無不通顯, 德一介然自守, 乞郡以出。】’”; 『인조실록』 권3, 1년 9월 9일 丙申 “大司成鄭曄爲養母上疏乞郡.”; 권10, 3년 11월 18일 癸亥 “弘文館應教李敬輿上疏陳情, 爲母乞郡.”; 권21, 7년 12월 15일 乙丑 “刑曹判書沈誼上疏爲養乞郡 吏曹以爲:‘六卿出宰, 雖無前例, 而情理切迫, 可許也’ 命除安邊府使”; 『정조실록』 권13, 6년 2월 10일 丁丑 “漢城府右尹蔡弘履, 以親老上疏乞郡, 以宰臣作宰體重, 不許 ”

82) 『인조실록』 권37, 16년 7월 23일 甲申 “憲府啓曰:‘侍從之官爲親乞郡者, 必有偏親可以奉養於郡邑, 然後乃爲陳疏, 卽流來舊規也. 唐津縣監金弘郁, 父母俱存, 而乃敢偃然陳乞, 政院矇然入啓, 該曹從而聽從 近來法綱之紊, 至於如此, 此路一開, 後弊無窮. 金弘郁, 請命罷職, 其時色承旨, 該曹堂上·郎廳, 竝命推考.’”; 『영조실록』 권22, 5년 5월 10일 甲寅 “台佐曰:‘古例只許有偏母者乞郡, 父母俱存, 則不得乞郡. 蓋以偏母將往任所, 父母俱存, 則將往

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玉堂과 臺諫은 外任에 擬望될 수 없기 때문에 乞郡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나, 春坊은 외임에 의망될 수 있기 때문에 乞郡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였다.⁸³⁾ 반면에 대간은 經筵官인 옥당과는 다르기 때문에 乞郡할 수 없다는 기록도 보인다.⁸⁴⁾ 영조는 시종신이 걸군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였다가 풀어주기도 하였다.⁸⁵⁾ 그 뒤 정조는 현임 承旨와 玉堂만 걸군할 수 있게 허락하고 나머지 관원의 걸군은 금지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법전에도 수록되었다.⁸⁶⁾ 남에게 入養된 관원이 걸군할 경우에는 입양된 집의 부모나 친 부모를 위해 모두 걸군할 수 있었다.⁸⁷⁾ 乞郡疏에 대해 국왕이 비답을 내려주지 않고 啓字만 찍어서 내려줄 경우에는 국왕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시행하였다.⁸⁸⁾

④ 徑出疏

徑出疏는 관원이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궐문을 나가면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궐 안에서 근무하거나 入直하던 관원이 중간에 궐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국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었다. 만약 궐 안에서 入直하던 관원이 허락을 받지 않고 궐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해당 관원이 通政大夫이면

難便故也 近來父母俱存而乞郡者, 誠未安 請申飭一依舊例 允之 ”: 『新補受教輯錄』 「吏典」 外官職 “父母俱存者, 不得乞郡 雍正己酉, 承傳.”

83) 『숙종실록』 권64, 45년 7월 25일 丙申 “健命又言: ‘玉堂、吏曹及臺諫, 不得爲外任, 故許乞郡, 而春坊, 則例擬於兵曹郎官、寺正、外任等職, 故無乞郡之規矣 今番春坊有乞郡者, 聞曾有一番前例云, 而格例, 則非矣 既已除外任者, 雖不可還收, 此後, 則春坊乞郡疏, 勿許捧入, 宜矣 ’ 世子令申飭政院 ”

84) 『숙종실록』 권34, 26년 10월 3일 壬戌 “獻納魚史徽上疏, 爲親乞郡, 上下該曹稟處. 左議政李世白筭言: ‘出入兩司者, 非如經幄之臣. 今史徽陳情之疏, 終難免僭率, 而喉司不顧事體, 驟然捧入. 當該承旨推考, 成命宜亟還寢 ’ 上從之.”

85) 『영조실록』 권88, 32년 7월 21일 丙戌 “上命許侍從人乞郡. 前時, 以侍從乞郡之紛然, 有勿施之教, 至是, 復許之.”; 권111, 44년 10월 17일 辛未 “仍命一源倍道拿來, 以臺諫違牌大司憲南泰著特補巨濟府使, 倍道赴任, 侍從臣乞郡, 一切嚴禁, 已乞郡者竝遞, 以新除守令之未及待令於常參, 竝命罷職 ”

86)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承旨、玉堂外乞郡之疏, 勿許捧入 【丁巳八月三日下教】”; 『大典會通』 「吏典」 雜令 “承旨、玉堂未行者, 勿許.”;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 “時任承旨、玉堂外乞郡疏, 勿捧.”; 『銀臺條例』 「工巧」 上疏 “時任承旨、玉堂外, 毋得乞郡.”

87) 『大典通編』 「吏典」 雜令 “乞郡, 勿論所後、本生家, 竝許施 ”

88) 『銀臺條例』 「附錄」 “乞郡疏, 無批答, 只踏啓字以下, 則稟.”

罷職하고 堂下官이면 의금부에 내려 推考하였다.⁸⁹⁾ 특히 병조와 도총부의 입직 하던 관원은 다른 관직으로 옮겨지거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후임자와 만나서 교대한 뒤에야 궐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重罪로 처벌하였다.⁹⁰⁾ 그러나 일부 관원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徑出疏를 올리고서 궐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경출소를 올릴 수 있는 관원은 玉堂, 春坊, 承旨 등 대부분 국왕과 세자의 측근 신하들이었다.⁹¹⁾ 史官과 注書는 원칙적으로 경출소를 올릴 수는 없었으나 관례적으로는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⁹²⁾

경출소를 올릴 수 있는 사안은 크게 2가지였다. 하나는 부모의 병 때문에 지체할 수 없을 때이고, 또 하나는 다른 관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았거나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 버젓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일 때이다.⁹³⁾ 위의 2가지 사안 이외

89) 『續大典』 「吏典」 雜令 “禁直徑出者, 通政罷職, 堂下官禁推 ”

90) 『大典會通』에는 이런 경우에 軍法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大典會通』 「兵典」 入直 “本曹、摠府入直人員, 勿論移職、被罪, 毋得徑出曠直, 面看交代, 違法者, 以軍法從事 ”; 『銀臺便攷』 「兵房攷」 兵曹 “兵曹入直堂上, 不待面看交代徑出, 則禁推。【壬申八月二十九日定式】”;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入直摠管與兵曹堂上, 雖以親病陳章, 待批下面看交替, 而若徑出, 則請重勸。”

91) 『銀臺便攷』 「禮房攷」 弘文館 “副校理黃浩民, 謂有難安之端, 陳疏徑出, 原疏則捧入, 請從重推考。【丙申四月初五日 ○次對入侍時, 承旨李圭祐, 以無所懷請推事, 陳疏徑出, 而入侍承旨, 亦爲陳疏徑出 初六日, 答承旨疏曰: ‘儒臣問備, 爾之昧例所致, 其言安得不然! 受而爲過, 不亦宜乎! 勿辭察職’】 ……○己亥四月二十九日入侍時, 右承旨李愚在所啓: ‘玉堂、春坊若有親病, 則陳疏徑出, 既有前例, 而至於身病徑出, 初無是例 近來春坊, 謂有身病, 不通政院, 微稟于世子宮, 直爲出去 方當書筵開講之日, 若以春坊之空番不得備員, 則事體之寒心, 莫此爲甚。自今以後, 更有身病徑出之事, 則自政院直捧傳旨, 何如?’ 上曰: ‘依爲之’ ”

92) 『은대편고』에는 史官이 자신의 병을 이유로 경출소를 올린 경우에는 의금부에 내려 추고 하도록 하였고, 注書 徐有聞이 경출소를 올렸다가 처벌받은 기록도 보인다. 이러한 기록은 사관과 주서도 관례적으로는 경출소를 올렸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으며, 실제 『승정원일기』에도 이러한 사례가 다수 보인다. 『銀臺便攷』 「禮房攷」 藝文館 “檢閱, 謂有身病, 陳疏徑出, 則依定式禁推傳旨捧入。”; 『銀臺便攷』 「通攷」 注書 “己酉七月初四日, 啓曰: ‘即者注書徐有聞謂有情勢, 陳疏徑出, 原疏才已退却矣 所當直捧禁推傳旨, 而此與無端徑有異, 推考警責, 仍卽牌招察任, 何如?’”;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5월 4일 “奉教鄭齊泰上疏 大概臣於直中, 聞母病甚重, 人子至情, 不能自抑, 急於救護, 陳疏徑出 乞罷臣職, 俾得專意救護, 仍治臣冒出之罪, 以嚴邦憲 事, 留政院 ”; 숙종 23년 윤3월 11일 “注書朴彙登上疏 大概臣於直廬中, 伏聞病母, 自昨夕添得感冒, 達夜叫痛, 症情危苦, 臣方寸攪亂, 情理難忍, 不得不陳疏徑出 伏乞聖慈, 亟遞臣職, 俾得專意救護, 仍治臣擅離直廬之罪 事, 入啓。”

에 자신의 질병이나 私忌 등을 이유로는 徑出疏를 올릴 수 없었고, 2가지 사안 중 다른 관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사안이더라도 아직 그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리 徑出疏를 올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⁹⁴⁾ 徑出疏를 올릴 수 있는 관원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諫 안의 관사에서 근무하는 侍從臣이었다. 그러나 諫 안의 관사에서 근무하지는 않더라도 政事를 열기 위해 諫 안의 政廳에 나아온 銓曹 관원이 徑出疏를 올리는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⁹⁵⁾

徑出疏와 유사한 장소로 徑行疏가 있었다. 徑行疏는 諫 밖에서 근무하거나 入直하던 관원이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 장소를 떠나면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徑行疏를 올릴 수 있는 관원은 諫 밖의 관사에서 근무하는 관원이었고, 사실상 兩司의 臺諫으로 제한되었다. 양사의 대간이 경쟁소를 올리면 승정원에서는 推考하기를 청하였으나, 推考가 형식적인 처벌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간이 徑行疏를 올리는 것은 관행으로 굳어졌던 것으로 보인다.⁹⁶⁾ 徑行疏를 올릴 수 있는 사안은 徑出疏와 동일하였다.

93) 주) 91 참조.

94) 『銀臺便攷』 「禮房攷」 弘文館 “應教趙琮(+鎮), 謂有私忌, 直請給暇, 陳疏到院, 而此等陳章, 既無其例, 故本院退却矣。終乃投疏徑出, 原疏又爲還給, 捧入禁推傳旨【甲戌四月二十一日。○仍禁推傳旨分揀】 ○副應教李彥淳、副校理金大坤, 謂以‘臺疏大槩, 有裁處之請’ 陳疏徑出, 本院以‘臺疏批下之前, 未見疏本, 臆料徑出, 事未前有, 誠極可駭。措辭, 請重勸。傳曰: ‘從重推考’【壬午十一月二十二日。】 ○校理李竣祐、副修撰金羽根, 謂以‘經宿未承筭批’ 聯疏徑出, 本院退却原疏, 措辭請推。【庚寅六月初七日】”;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關內入直, 以身病陳疏徑出, 則直捧禁推傳旨”

95) 『銀臺便攷』 「吏房攷」 政官 “吏曹判書李最中、參判李徽之、參議李海重來詣政廳, 謂有情勢, 陳疏徑出, 啓辭請推, 仍請牌招【壬辰正月二十九日 其後丁酉十月初四日, 吏判李徽之, 壬子四月二十日, 吏判金思穆, 亦以情勢徑出, 啓辭同】 ……○吏曹判書、參判再牌啓辭批答, 有參議只推參判牌招之命, 參判金道喜承牌詣闕疏陳, ‘長銓之初不出牌, 次堂之遽然冒膺, 銓家之所未有’云云, 徑出禁局, 答曰: ‘卿言無怪。原批還收’【判書洪奭周, 以實病無牌招之命, 甲午四月二十七日】”

96)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兩司, 以其親病投章徑歸, 則推考 ○二品長官, 徑尋鄉路, 原疏退却後, 請推。”;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10월 2일 “重馥又啓曰: ‘近日臺臣之投章徑行者, 前後相續, 當此鎮日詣臺之時, 許多臺官, 不可一任其虛糜 請陳疏下鄉諸臺, 一竝遞差。’”; 순조 8년 4월 18일 “宋知濂啓曰: ‘堂下官之無得陳疏擅行, 自有定式, 而執義申淑, 謂有情私, 呈疏徑行, 原疏纔已退却矣。揆以事體, 萬萬未安, 所當重勸, 而本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 敢稟’ 傳曰: ‘拿處’”; 철종 3년 3월 28일 “正言金秉周父病, 陳疏徑行。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往救’”

⑤ 引嫌疏

引嫌疏는 관원이 다른 관원의 탄핵을 받거나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관직을 맡을 수 없는 처지라는 내용으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引嫌疏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辭職疏에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辭職疏가 다른 관원의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辭職에 초점을 두고 올린 상소라면, 引嫌疏는 다른 관원의 탄핵을 받거나 모종의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한 자신의 처지나 입장을 해명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引嫌疏는 自引疏라고도 부르며, 辨誣疏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引嫌疏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辨誣疏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引嫌疏에 대해 국왕이 인협할 필요가 없다고 비답을 내리면, 상소를 올린 당사자로서는 관직을 계속 맡을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⁹⁷⁾ 어쩌면 그러한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올리는 상소가 引嫌疏와 辨誣疏라고 하겠다.

대간이 다른 관원의 탄핵을 받거나 국왕의 질책을 받을 경우 등에는 避嫌啓辭를 올렸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피혐계사를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出仕하도록 處置를 받고 난 뒤에 피혐계사를 대신하여 올린 避嫌上疏도 引嫌疏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⁹⁸⁾ 『속대전』에서는 儒生들이 조정의 관원에 대해 付黃·削籍하는 폐단을 일절 금지시키고 당사자인 조정의 관원도 그러한 일로 引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⁹⁹⁾

97)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6월 29일 “京畿監司書目：「臣病勢、情勢、俱難冒居，敢陳危懇，乞賜遞免。」事，上疏上送 事。啓。答曰：「省疏具悉。今茲引嫌，殊涉太過，卿其勿辭，從速察職。」又書目：「楊州呈，以禮曹判書朴泰尙辭職上疏上送 事。啓。答曰：「省疏具悉卿懇 朝家既已區別處分之後，一向引嫌，殊涉太過，卿其安心勿辭，從速上來行公。」又書目：「果川呈，以黃海監司金夢臣辭職上疏上送 事。啓。答曰：「省疏具悉 銓曹之注擬，實循公議，則不必過自引嫌，卿其勿辭，速往欽哉！」”； 영조 1년 5월 11일 “獻納徐命九疏曰：「……」 答曰：「省疏具悉 疏中引嫌，殊涉太過，爾其勿辭，從速察職。」”

98) 이강욱, 2014 「臺諫 啓辭에 대한 考察」 『고문서연구』 45, 133-136면.

99) 『續大典』 「禮典」 雜令 “儒生輩朝官付黃削籍之弊，一切禁斷，而如有犯者，自成均館卽爲啓達，令該曹定配，黃墨勿施，當之者，毋得引嫌 ”； 『典律通補』 「禮典」 雜令 “儒生輩朝官付黃削籍之弊，一禁 【犯者，成均館啓達定配，黃墨勿施，當者，毋得引嫌。『續』】”

⑥ 草莽疏

草莽疏는 草野에 있는 신하가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아직 政界에 진출하지 않은 儒賢이 草野에 있으면서 상소를 올릴 때 서두에 官職名 대신 '草莽臣'이라고 적어서 올리는 상소를 草莽疏라고 하였다.¹⁰⁰⁾ 草莽臣이란 말은 孟子가 '서울에 있는 사람을 市井之臣이라 하고 草野에 있는 사람을 草莽之臣이라 한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¹⁰¹⁾ 현종 10년(1669)에 朴世采와 宋基厚가 각각 草莽臣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상소가 草莽疏의 시초로 보인다.¹⁰²⁾ 이후 숙종 때 朴世采와 尹拯이, 정조와 순조 때 宋煥箕와 宋穉圭가 여러 차례 초망소를 올린 기록이 보인다.¹⁰³⁾ 초망소는 대부분 儒賢이 국왕의 부름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국왕에게 권면하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었다.

⑦ 草土疏

草土疏는 부모의 상중에 있는 신하가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부모의 상을 당한 신하는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벼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상소를 올릴 수도 없었다. 그러나 상중에도 상소를 올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상소의 서두에 官職名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서두에 '상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草土臣'이라고 썼다.¹⁰⁴⁾ '草土臣'으로 상소한 사례는 고려 공민왕 1년(1352)에 李穡이 토지제도와 田稅, 국방력의 강화, 佛敎 비판 등의 내용으로 올린 것이 처음으로 보이고,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 6년(1406)에 예문관대제학에 제수된 權近

100) 『公車類覽』 「疏書笥凡例」 “疏書及聯名書疏, 具書資階及本兼職, 若軍職, 則書軍銜; 儒賢曰草莽臣; 在罪中, 則曰負罪臣; 在草土, 則曰草土臣 ”

101) 『孟子』 「萬章下」 “在國曰市井之臣, 在野曰草莽之臣。”

102)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1월 23일 “草莽臣朴世采疏曰‘……’”; 현종 10년 4월 14일 “草莽臣宋基厚疏曰‘……’”; 『숙종실록』 권11, 7년 2월 10일(甲午) “朴世采從縣道上疏, 辭召命, 不書職名, 稱草莽臣. 上優批敦召.”

103) 『승정원일기』 숙종 7년 2월 25일 “草莽臣朴世采疏曰‘……’”; 숙종 27년 8월 7일 “草莽臣尹拯疏曰‘……’”; 정조 16년 2월 10일 “草莽臣宋煥箕疏曰‘……’”; 정조 24년 1월 23일 “草莽臣宋穉圭疏曰‘……’”; 순조 즉위년 7월 18일 “草莽臣宋煥箕疏曰‘……’”; 순조 즉위년 9월 23일 “草莽臣宋穉圭疏曰‘……’”

104) 주) 100 참조.

이 起復出仕를 사양하면서 올린 것이 처음으로 보인다.¹⁰⁵⁾

신하가 상중에 올리는 草土疏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첫째는 起復出仕를 사양하는 것이다. 起復出仕란 나라에서 상중에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서 관직에 복귀시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예조가 臺諫의 署經을 거친 뒤에 당사자에게 依牒을 발급하였다.¹⁰⁶⁾ 광해군 때 朴承宗의 경우에는 상을 치르던 기간 중 議政에 제수되었으나 삼년상을 치르는 기간 내내 기복출사를 사양하는 草土疏를 올렸다.¹⁰⁷⁾ 둘째는 나라에서 죽은 신하에게 베푸는 恩典과 관계된 것이다. 죽은 아버지에게 내린 諡號의 수정을 요청할 때 및 부모의 유지에 따라 禮葬이나 賻儀 등을 사양할 때에 草土疏를 올렸다.¹⁰⁸⁾ 셋째는 죽은 부모나

105) 『高麗史』 권115, 列傳 卷28 諸臣 “恭愍元年, 穡服中上書曰: ‘草土臣穡言 臣聞『當國家無事之時, 公卿之言, 輕於鴻毛, 及國家有事之後, 匹夫之言, 重於太山』 臣以匹夫之賤, 冒進敢言, 狂妄之罪, 宜在不宥”; 『태종실록』 권11, 6년 5월 1일 庚寅 “權近上箋辭職. 箋曰: ‘草土臣權近上言 伏蒙聖恩除臣藝文館大提學, 聞命驚懼, 罔知所措”; 권11, 6년 5월 13일 壬寅 “權近復上書辭起復 書略曰: ‘草土臣權近 伏聞傳旨臺省, 令及重試出臣起復依牒”

106) 『經國大典』 「禮典」 依牒 “新法之立、舊法之改及在喪人員起復者, 議政府擬議以聞, 本曹考司憲府、司諫院署經, 出依牒.”

107) 朴承宗이 상중에 올린 8건의 草土疏가 『광해군일기』에 실려 있다. 『광해군일기』 권47, 10년 9월 13일 戊戌 “草土臣左議政朴承宗上疏, 請寢起復之命、仍改正相職”; 권48, 10년 10월 4일 己未 “草土臣朴承宗上疏 大概乞還收起復之命, 因改正相職事.”; 권50, 11년 7월 24일 乙巳 “草土臣朴承宗啓曰: ‘……’”; 권51, 11년 11월 18일 丁酉 “草土臣朴承宗上疏 大概前月中投辭疏, 批答未下, 連瀆宸嚴, 尤增死罪, 伏地惶恐 事, 入啓.”; 『광해군일기』 권52, 12년 1월 22일 辛丑 “草土臣朴承宗上疏. 大概臣病日益沈綿, 伏乞聖慈, 亟收起復之命, 俾得瞑目入地 事, 入啓. 王溫旨勉諭.”; 권52, 12년 1월 26일 乙巳 “草土臣朴承宗上疏. 大概十月中, 備邊司啓辭, 有莫不關由等語, 是指臣以居喪專輒之目也 伏乞亟寢起復, 改正相職. 事, 入啓”; 권52, 12년 4월 2일 己酉 “草土臣朴承宗上疏 大概辭職事, 入啓”; 권53, 12년 5월 8일 乙酉 “草土臣朴承宗上疏以爲: ‘古今天下, 寧有居喪受職, 仍帶服闋之理乎! 賤疾深痼如此, 決無陳力之望. 伏乞亟遞相職”

108) 『성종실록』 권143, 13년 7월 18일 乙酉 “草土臣金克忸等上疏. 略曰: ‘臣等將太常議父諡不公事, 累疏至六, 未蒙俞允, 含哀抱痛, 朝夕哭泣者, 不日月矣. ……伏願殿下哀臣等抱鬱之情, 憐臣父求全之毀, 特命改諡, 則臣父之冤, 可伸於九泉之下, 而臣等之情, 亦可伸於白日之下矣”; 『헌종개수실록』 권18, 8년 8월 14일 丙戌 “草土臣李惟泰上疏辭喪需題給之命曰: ‘先正臣李滉, 以貳公儒宗, 猶令子孫請辭身後恩典 其例所當得, 猶且如此, 則今臣自拘於凶服, 泯默冒受, 誠有所不敢者’ 上答以意非偶然, 勿辭領受.”; 『숙종실록보정』 권55, 40년 2월 1일 癸酉 “草土人尹行教上疏, 陳其父拯遺意, 辭禮葬及月廩, 遣其子齋呈”; 『영조실록』 권68, 24년 윤7월 19일 辛未 “草土臣朴師近上疏, 辭賻贈, 仍進其父弼周遺疏.”

상중에 있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草土疏는 죄인의 진술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거나 죽은 아버지가 모함을 받는 것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¹⁰⁹⁾ 넷째는 時政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李穡의 草土疏도 그러한 사례라고 하겠으며, 그 외에도 외교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왕의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다.¹¹⁰⁾ 草土疏 중에는 그 외에 아들의 입양에 관한 내용도 보인다.¹¹¹⁾

⑧ 負罪疏

負罪疏는 죄를 지은 신하가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죄를 짓거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또는 전직 관원이 상소를 올릴 때 상소의 서두에 官職名을 쓰지 않고 ‘負罪臣’이라고 쓴 상소를 負罪疏라고 하였다.¹¹²⁾ 광해군 8년(1616)에 判義禁府事 朴承宗이 凶書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상소의 서두에 ‘負罪臣’이라고 써서 올린 것이 負罪疏의 시초로 보인다.¹¹³⁾ 그 뒤에 姜弘立

109) 『인조실록』 권18, 6년 2월 25일 丁巳 “草土臣金蓋國上疏曰:‘臣於反政之初, 特蒙天恩, 受任重地, 眷遇日深, 數年之間, 位至崇班, 但思盡心職事以報聖恩而已 不幸臣之姓名, 屢出於兇逆之招, 席藁經旬, 威命不下, 終有安心之教, 聖恩洪大, 天地莫量 顧念人臣之義, 既爲兇賊所舉名, 則不可容息於覆載之間。亟命有司議定臣罪 ’”; 『정조실록』 권1, 즉위년 4월 11일 壬子 “草土臣金龜柱上疏曰:‘近日諸疏中丙戌人蔘事, 卽先臣志事之所在也 繼伏見金致仁劄子, 其爲言周遮模糊, 漫漶事實, 誠非意慮之所及也 蓋先臣純用羅蔘之議, 始發於二月二十五日聖侯添劇藥院移直之際, 而直至三月十九日, 始乃得用, 則其間數十餘日 先臣之使醫官往議都提舉者, 不啻幾次, 其時酬酢, 非但先臣之使大臣力主其論, 大臣亦勸先臣言之於彼 今雖曰日月稍久, 此豈可忘之事耶! 亟命詳覈事情, 俾先臣之靈得以無憾於地下 ’”

110) 『인조실록』 권36, 16년 1월 26 庚寅 “前左議政草土臣洪瑞鳳上疏曰:‘倭書七事中, 其一, 則‘物貨不如舊者, 不通大唐而然。’云 此是第一句當, 不可泛常修答依違掩護而止也。……’ 答曰:‘所陳之事, 當與廟堂議處焉。’”; 『정조실록』 권39, 18년 4월 11일 丁卯 “草土臣金文淳等上疏。教曰:‘語多觸犯, 無難涉禁。特非平人之故, 雖不嚴處, 亦不可仍置。令該府以違制之律勘處 義禁府議律, 文淳等,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권39, 18년 4월 12일 戊辰 “草土臣李時秀、李晚秀、沈象奎、具虞上疏。批曰:‘勿煩。’”

111) 『순조실록』 권6, 4년 2월 23일 癸未 “草土臣李魯春疏, 請以其子前待教教信爲其亡兄魯傳之嗣, 許之。魯春於前月, 有母喪, 當以教信承重也 ”

112) 주) 100 참조.

113) 『광해군일기』 권36, 8년 5월 17일 丙戌 “政院啓曰:‘今日庭鞠爲之事, 命下矣。卽者禁府郎

등은 상소가 아닌 狀啓의 서두에 ‘負罪臣’이라고 써서 올렸다.¹¹⁴⁾ 이후 주로 山林과 議政들이 ‘負罪臣’이라고 자칭하면서 상소한 사례가 자주 보인다.¹¹⁵⁾

산림과 의정이 아닌 신하로는 司直 朴文秀, 전임 咸安郡守 李宗榮, 知義禁府事 李文源 등이 올린 負罪疏가 보인다.¹¹⁶⁾ 그러나 負罪疏는 전임 또는 현임 대신이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¹⁷⁾ 이는 대신과 같은 최고위 관원에게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하위 관원의 경우에는 의금부에 나아가 심문을 받아 죄의 유무를 가리도록 하고 상소하여 변명하는 기회를 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은대편고』와 『육전조례』에서는 아예 大臣 이외에는 負罪疏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¹¹⁸⁾ 趙泰億 등은 ‘負罪臣’ 대신에 ‘負累臣’이라고 자칭하였다.¹¹⁹⁾

廳來言「領議政奇自獻, 則今以待命事, 當到闕下云, 判義禁朴承宗, 則自名出兇書之後, 本府大小公事, 全不管攝。」云矣 ”; 권36, 8년 5월 18일 丁亥 “傳曰:‘判義禁上疏, 盡去職名以負罪臣書入, 大可駭異, 事體未安。此意諭之, 使勿爲如此過重之事 ’”

114) 『광해군일기』 권50, 11년 7월 14일 乙未 “姜弘立等狀啓云:‘負罪臣姜弘立、金景瑞、李民寯等, 伏以……’【弘立等受命闕外, 不思徇國之義, 屈膝醜虜, 自稱負罪臣, 偃然狀啓, 力陳和事, 使我東禮義之邦變爲禽獸之域, 惡貫天地, 罪不容誅, 可勝言哉! 可勝痛哉! 所謂陵與、衛律之罪上通于天者, 誠是矣。】”

115) 『효종실록』 권20, 9년 12월 13일 乙亥 “鑄嘗占他人之山, 改葬其父母, 訟官不直之, 鑄以此及於疏中, 而自稱爲負罪臣。”; 『현종실록』 권20, 13년 4월 28일 癸卯 “領議政許積上疏曰:‘……’ 上遣承旨鄭鎰諭之曰:‘……卿之請罪, 何乃太過! 至於書以負罪, 尤爲過激 予心不安, 更勿復言。卿其須體予意, 從速入來, 以副至望 ’ 積疏中自貶其職名, 書以負罪臣, 故聖教如此 ”; 『현종개수실록』 권3, 1년 5월 9일 癸亥 “右贊成宋時烈自稱負罪臣上疏曰:‘……’”; 『숙종실록』 권19, 14년 11월 12일 辛巳 “吏曹判書朴世采, 不書職名, 稱以負罪臣, 在鄉上辭疏 ”

116) 『영조실록』 권47, 14년 9월 1일 庚戌 “司直朴文秀稱負罪臣, 復陳告退未徹之章。”; 『정조실록』 3년 10월 12일 壬戌 “負罪臣李宗榮上疏, 請寢洪國榮許休之命. 不許.”;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7월 9일 “負罪臣李文源疏曰:‘……’”

117) 『영조실록』 권35, 9년 7월 17일 丙申 “奉朝賀閔鎮遠稱以負罪臣上疏.”; 권40, 11년 윤4월 23일 壬辰 “判府事李宜顯在楊州稱負罪臣上疏辭職, 賜例批.”; 권52, 16년 9월 17일 乙酉 “判府事俞拓基不書職名, 以負罪臣上疏.”; 『정조실록』 권1, 즉위년 4월 1일 壬寅 “追奪李光佐、趙泰億、崔錫恒官爵, 禁錮金若行. 先是, 若行以負罪臣上疏曰:‘……’”; 『순조실록』 권33, 33년 5월 6일 丙子 “右議政沈象奎以負罪臣從縣道陳疏乞遞 ”

118)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大臣外, 毋得以前啣及負罪陳章辭職 ”;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 “新拜大臣, 以前職陳疏, 則大槩, 以前職頒布 【大臣外, 毋得以前銜及負罪陳章 】”

(2) 公的인 上疏

① 言事疏

言事疏는 관원이 時事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국가의 정책, 국왕의 조치, 신하의 비위, 백성의 고통 등 時事에 대해 상소를 올려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관원이면 누구나 가능하였으나,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관원은 조선시대 내내 言官의 책임을 담당하였던 臺諫과 玉堂이었다. 실제로 대간과 옥당이 언사소를 올린 기록은 조선전기의 실록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¹²⁰⁾ 조선후기에도 대간과 옥당은 언사소를 올려 時事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였다.¹²¹⁾ 따라서 三司의 관원은 辭職疏를 올리더라도 시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했으며, 만약 三司의 관원이 상소를 올렸는데 시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고 사직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승정원에서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¹²²⁾ 일반적으로 국왕이 齋戒하는 날에는 승정원에서 문

119)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2월 14일 “負累臣趙持謙上疏, 入啓.”; 『영조실록』 3년 7월 20일 甲戌 “左議政趙泰億上疏, 自稱負累臣”; 『승정원일기』 영조 3년 7월 20일 “左議政趙泰億疏曰: 負累臣趙泰億, 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言于主上殿下. 伏以……”; 영조 3년 7월 26일 “負累臣趙泰億疏曰: ‘……’

120) 『태종실록』 권29, 15년 1월 22일 辛酉 “司憲持平琴柔詣闕啓曰: ‘近日有旨, 臺諫言事, 當進代言司陳達, 毋用章疏, 誠爲美法. 然雖用章疏, 猶恐其不能細達, 豈可以口舌曲盡其奧! 又恐傳語之際, 或失指趣, 況自去年不入朝啓, 今又不用章疏, 恐下情無以上達. 在今明時, 固無虧欠, 竊恐後世承式, 將有未流之弊.’”; 권29, 15년 3월 14일 壬子 “司諫院上疏. 疏略曰: ‘近伏見每衙朝後, 政府、六曹外, 大小臣僚欲言民間利害、時政得失者, 前一日呈報單于禮曹, 禮曹許令通禮門進告承政院. 臣等竊謂臺諫本是言官, 報於禮曹, 乃得言事, 似爲未愜. 乞令除報單, 直告承政院以聞.’”; 『문종실록』 권2, 즉위년 7월 16일 戊午 “修撰柳誠源上書曰: ‘古人言事, 言不見聽則罷. 夫諫行言從, 君臣俱受其美, 此士君子, 平昔所懷也. ……’”

121) 『숙종실록』 권59, 43년 2월 28일 癸丑 “憲府申前啓 又言: ‘昨日筵中, 因藥院陳達, 有三司言事疏溫幸前勿捧之命. 夫國家之置三司, 乃所以授耳目之寄, 畀論思之責. 當此艱虞溢目災異孔慘之時, 雖日下求助之教, 尙患言路之不廣, 豈可申之以禁令以絕來諫之路乎! 請還收三司疏勿捧之命.’ 上不從.”; 『숙종실록보궐정오』 권34, 26년 3월 25일 戊午 “持平李世維, 上言事疏, 以上之輕視輔相, 縷縷陳戒, 上批以未可曉, 責之.”; 『영조실록』 권124, 51년 2월 1일 己卯 “白師殷爲鎭川縣監. 師殷爲臺諫時, 有言事疏, 上特爲嘉納, 命除守令, 故至是政官首擬爲之.”

122) 『銀臺便攷』 「工房攷」疏章 “三司既無言事而單辭職, 則不得捧入.”

서를 올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으나, 三司의 관원이 올린 言事疏는 승정원에 서 내용을 요약하여 올렸으며, 三司의 관원이 遞差되었더라도 체차되기 전에 올린 언사소는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물어본 뒤에 올렸다.¹²³⁾ 대간은 사직하겠다는 내용 없이 시사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만으로 상소할 수가 있었고, 辭職疏라 하더라도 시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啓字만 찍어서 내려주지 않고 국왕이 비답을 내려주는 것이 관례였다.¹²⁴⁾

② 應旨疏

應旨疏는 전직·현직 관원 및 儒生 등이 直言을 구하는 국왕의 뜻에 부응하여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겨울에 천둥 번개가 칠 때나 여름에 가뭄이 심할 때처럼 災異 현상이 발생하면, 국왕은 자신이 덕이 없어 이런 災異 현상을 불러들인 것으로 보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신하들에게 直言을 구하였다. 그러면 신하들이 이에 응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이를 응지소라고 하였다. 應旨疏 또는 應旨上疏라는 이름은 선조 때가 되어서야 보이지만, 국왕이 신하들에게 직언을 구하고 신하들이 이에 부응하여 상소를 올린 사실은 태조 때에도 보인다.¹²⁵⁾ 응지소는 국왕의 측근 신하들은 물론이고 중앙의 최하위 관원과 지방의 수령도 올릴 수 있

123) 『銀臺便攷』 「刑房攷」 臺疏 “以時臺陳疏, 而到院若在遞職後, 則本院以雖已遞職, 係是言事, 故捧入’之意, 微稟入啓, 批下後, 前職書出 ”;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凡上疏, 若值齋日, 則不得捧入 【三司言事疏, 值齋日, 則留院, 抄要語入啓】 ……○凡縣道疏, 無論言事有無, 若值齋日, 則留院公事書入 【三司若縣道封章而有言事, 則雖遞職, 入稟入啓。】”;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三司縣道封章, 有言事, 則雖遞職, 微稟捧入 【無言事而已遞職, 則還下送。】”

124) 『銀臺便攷』 「刑房攷」 臺疏 “臺諫辭疏, 踏啓字以下, 而若有言事, 則臺疏, 事體自別, 賜批’事, 自本院覆逆 【丙午四月初四日。】”;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臺諫, 只以言事陳疏, 無辭職, 雖未承批, 凡請牌, 勿拘循例爲之 【詣臺臺臣, 無辭職, 只言事, 雖在闕中, 勿拘陳疏, 依例捧入, 亦爲行公。】”;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臺疏踏啓字以下, 而若有言事, 則臺疏, 事體自別, 賜批’事, 覆難 ”

125) 『태조실록』 권6, 3년 8월 2일 己巳 “諫官全伯英等上疏曰:’……殿下即位之初, 廣布德音, 以賜中外, 今又以治安之道, 講問於都評議使司, 此斯民之大幸, 而可以答上天之意也。臣等感激之至, 敢陳卑抱, 以謝殿下求言之美意, 儻蒙俞允, 萬萬幸甚。”; 권8, 4년 7월 20일 辛亥 “雷電 上以災異求言。”; 권10, 5년 7월 20일 乙亥 “上以天變, 自責求言。中樞院副使張子忠上書以爲:’人事失於下, 則天變應於上。’極言天人相應之理 ”

었고, 심지어 전직 관원과 관원이 아닌 儒生 등도 올릴 수 있었다.¹²⁶⁾ 그런 점에서 보면 상소 중에서도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의 범위가 가장 넓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大臣 이외에 전직 관원으로서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應旨疏뿐이었고, 그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았다.¹²⁷⁾

應旨疏는 국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에서 올리도록 한 것이었으나, 應旨疏의 내용이나 시행 여부를 두고 국왕과 신하 또는 신하와 신하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국왕이 應旨疏를 받아두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 應旨疏의 내용을 문제 삼아 해당 신하를 처벌하는 경우, 應旨疏라는 이름을 빌어 다른 신하들을 터무니없이 공격한 경우 등이 그러한 예이다.¹²⁸⁾

③ 執藝疏

執藝疏는 言官이 아닌 관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가지고서 국왕에게

126) 『인조실록』 권10, 3년 9월 23일 戊辰 “漢城左尹尹暘, 應旨上疏, 上優答之 ”; 6년 8월 19일 丁未 “廣州士人李晤應旨上疏曰:‘……’”; 권42, 19년 5월 9일 癸未 “承文院副正字李應旨上疏 ”; 『효종실록』 권7, 2년 10월 7일 辛亥 “禮安縣監洪宇遠應旨上疏 ”; 『현종실록』 권3, 1년 8월 5일 戊子 “幼學尹涑上應旨疏, 其目有八 ”; 권9, 5년 10월 27일 乙酉 “前判官李厚先應旨上疏陳列十條。”

127) 전직 관원이 응지소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할지의 여부를 두고 정조와 순조 때에 허용과 불허를 반복하다가 時事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銀臺便攷』 「工房攷」疏章 “求言時外前啣疏, 正宗朝有禁令, 純宗癸亥, 因左議政徐龍輔所啓, 特許勿禁, 追因丙子下教, 復有禁令, 若有言事, 則請罪捧入.”; 『六典條例』 「吏典」承政院 總例 “求言外前銜疏, 勿捧。”

128) 『효종실록』 권6, 2년 6월 7일 壬子 “上下教曰:‘既下求言之教, 勸之使言, 而終不採用, 則求言之意安在! 昨見應旨諸疏, 多言鄭泰齊罪有可恕, 特令該府放釋 ’”; 권8, 3년 4월 20일 辛酉 “太和曰:‘下教求言, 已有日矣, 而無一人進言者 此是前日應旨之疏, 皆無採用之實, 故已成噤默之風矣.’ 上曰:‘是予聽納之誠, 有所未盡故也.’”; 『현종실록』 권4, 2년 4월 24일 癸卯 “太和曰:‘臣亦見之。第念當此遇災求言之日, 綱以應旨陳疏, 言雖怪戾, 至於施罰則不可 且綱既已退在山野, 削黜不關於身, 而於朝廷事體, 恐有妨矣 年前洪二龍之疏, 亦不加罪, 況此疏乎!’ 之源曰:‘綱雖可駭, 名以應旨, 恐不當施罪 ’ 上曰:‘予亦以爲不可罪之也 善道之事, 予不能善處, 以致如此 右參贊宋浚吉, 亦以此不安, 必欲還鄉, 不幸甚矣.’”; 권13, 8년 5월 28일 辛未 “獻納李東老啓曰:‘李碩馥繼黃孺而起, 托以應旨, 挺身投疏, 其危動君上, 醜辱朝紳之狀, 實與孺相表裏, 而游辭揣摩弄幻嘗試之態, 又有甚於孺者 請邊遠竄逐.’ 上不從 ”

간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執藝란 『書經』의 “공인들도 자신의 기예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서 간한다[工執藝事以諫]”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국왕에게 간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¹²⁹⁾ 孟子는 관원을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고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거취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관직을 지키는 자는 자신이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야 하고, 언론을 책임지는 자는 자신의 말이 수용되지 않으면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야 한다고 하였다.¹³⁰⁾ 조선시대에 언론을 책임진 관원은 臺諫과 玉堂이었고, 이들은 啓辭와 上疏·劄子를 올려 言官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였다.¹³¹⁾ 그 외의 관원들은 대부분 왕명을 집행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왕명을 거역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자신이 집행해야 할 왕명 중 오류나 부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 왕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상소를 執藝疏라고 하였다.

執藝疏는 六曹의 관원이 올린 경우가 많았다. 이조와 병조의 判書가 인사행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올리는 경우, 형조가 죄수의 처리에 관한 사안으로 올리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이다.¹³²⁾ 특히 형조와 의금부는 국왕의 명에 대해 草記로 거

129) 『書經』 「夏書」 胤征 “工執藝事以諫”

130) 『孟子』 「公孫丑下」 “有官守者，不得其職則去，有言責者，不得其言則去。”

131) 옛날에는 諫言할 수 있는 관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모든 관원이 국왕에게 간언을 올릴 수가 있었으나, 漢나라 때에 諫官을 두면서부터는 간관만 간언을 올릴 수 있고 그 외의 관원은 간언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27일 戊辰 “臺諫承召來啓：‘……且有言責者，不得其言則去，古之道也。辭狀既入，則身非臺諫，舍家何適！此亦非不料國體安然退家也。古者諫無官，工執藝事以諫，下至芻蕘，亦皆得言 自諫官之設，言之者，只臺諫耳’”； 권35, 5년 12월 8일 壬辰 “臺諫合司啓：‘古者諫無官，工執藝事以諫。至于漢代，始置諫員，而朝廷得失，人君過舉，唯臺諫言之，自古及今，其任重矣。’”； 『정조실록』 권43, 19년 10월 17일 甲午 “教曰：‘聲光之轟燁而雨兼風，警告於夜將曉之際，恐懼悚惕，若無所措。災祥之臻，惟人所召。予一人否德，未能底豫天心，不寧不令，發於匪時 消弭轉回之方，莫先於責躬，自今日減膳三日 在言責者，不求亦言，有官守者，各執藝事以諫。’”； 『순조실록』 권8, 6년 4월 20일 丁酉 “左議政李時秀曰：‘首相所奏甚好，而此，則上天之造化也 儒臣疏中『有司之職，固異言責，或有不敢爭執而奉行，或有先爭執而後奉行，執藝之論，不可設禁摧折。』云者，其言誠是矣’”

132) 『영조실록』 권111, 44년 10월 17일 辛未 “吏曹參判金鍾正上疏，略曰：‘朝臣奉老之人爲養

부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때 형조와 의금부의 당상관들이 왕명을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올리는 상소를 執藝疏라고 불렀다.¹³³⁾ 형조와 의금부가 올린 執藝疏는 국왕이 재계하는 날일지라도 국왕에게 물어본 뒤에 들여보냈다.¹³⁴⁾

조선시대에 신하가 왕명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繳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繳還이란 승정원에서 국왕의 명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¹³⁵⁾ 승정원의 기능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것처럼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것이었으므로, 승정원은 조선시대에 왕명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왕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의 명이 부당하거나 관례에 어긋날 경우에는 승지들이 이를 지적하고 철회하거나 보완하기를 요구하였다. 이를 繳還 또는 覆逆이라고 하였다. 승정원에서 繳還 또는 覆逆을 할 때에는 승지들이 연명하여 院議啓辭를 올렸다.¹³⁶⁾ 繳還 또

陳章, 則輒垂特恩, 許畀以邑, 此固錫類之至仁, 亦是聖朝之美事 今乃因不法守令凡係乞郡者, 不問治績之如何, 竝施遞改之罰, 怒近移乙, 事未前有. 略陳短章, 以效執藝之義焉.’ 上賜優批, 特寢前命 ”; 『정조실록』 권16, 7년 7월 5일 甲午 “刑曹判書鄭一祥上疏曰:‘……’ 批曰:‘首陳事, 深得執藝之義, 予庸嘉之 次陳向日傳教中句語, 謂之全無則未也, 混加云云, 卿言是矣 且今無言之世, 事係匡救, 烏可不從! 依施.’ ”; 『六典條例』 「兵典」 兵曹 政色附過 “罪犯至重者, 若混蒙點, 則銓堂執藝 ”

133) 『정조실록』 권18, 8년 9월 29일 辛巳 “判義禁府事韓光會等聯疏論金龜柱出陸事. 批曰: ‘拿命密旨, 欲使卿等管聽乎! 以處分之當否, 疏陳已見, 不妨爲執藝之箴, 而密旨不由王府云云, 殊不成說 下去者, 非都事乎!’ ”; 권27, 13년 5월 27일 癸未 “刑曹以罪人弼謨發配成命之下, 不得舉行.’ 啓 教曰: ‘無論禁府、本曹, 草記防啓之弊, 不可無一番嚴禁. 若有難於舉行之事, 以上疏陳見, 不害爲執藝之諫, 而以草記直請反汗如喉啓、臺啓者, 事體屑越. 甚至外藩守土之臣, 間以狀啓直云『不得舉行, 緣由馳啓』 寧有如許國體! 此後永革草記請寢之謬例, 外方, 則令廟堂行會嚴飭 ’ ”;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 “金吾執藝之草記防啓者, 切勿捧入 ”

134)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若金吾、秋堂執藝之疏及其他緊急疏之雖齋日不得不捧入者, 則微稟, 待下教入啓時, 書出傳教, 與大槩同爲頒布 【辛巳五月初八日, 護軍尹命烈, 以辨誣事, 齋日陳疏, 故要語書入. ○右該房舉行 】 ”;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金吾堂上執藝上疏到院, 則雖值齋日, 微稟入啓 ”

135) 승정원의 繳還에 대한 연구로는 이근호의 논문 「朝鮮中期 承政院의 ‘封還’ 慣行에 대한檢討」(2004 『史學研究』 75)가 있다.

136) 『銀臺便攷』 「禮房攷」 國恤 “有院議啓辭, 則院相與諸承旨同參 ”; 『銀臺便攷』 「通攷」 院中事跡 “成宗朝, 左承旨蔡壽坐事當遞, 命降左副 院議啓曰: ‘院中上下之間, 禮分甚嚴, 寧遞, 不當降 ’ 上答曰: ‘如某不可不在喉舌, 卿等安知予意!’ 不數月招授都承旨 ……○同副

는 覆逆에 관한 일로 승지들이 院議啓辭를 올렸으나 국왕이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승지가 단독 또는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繳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체차해주기를 청하였다.¹³⁷⁾ 이때의 상소를 繳還疏 또는 覆逆疏라고 할 수 있겠다.

④ 儒生疏

儒生疏는 儒生들이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儒生들이 상소를 올릴 때는 일정한 절차가 있었다. 상소를 올릴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동료 儒生들에게 簡通이나 通文을 보내 동의를 구하였고, 동료 儒生들이 동의하면 疏廳을 설치하고 상소의 대표자인 疏頭와 疏廳의 실무를 담당할 疏色을 차출하였다.¹³⁸⁾ 疏廳은 儒生들이 상소를 작성해서 올리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사무실로, 成均館과 四學 등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儒生들이 소청을 설치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市塵 상인에게 음식과 물자를 요구하는 등의 폐단을 일으켰다.¹³⁹⁾ 그에 따라 순조 34

-
- 承旨閔昌懃, 以荐棘罪人金鍾秀加律置之命下之後, 請寢成命事, 院議啓辭獨啓, 傳曰: '獨啓, 故重臣李潭後, 初有之例, 有難循例賜批'【甲寅四月初六日。】" 院議啓辭에 대해서는 이강욱, 2010 『啓辭에 대한 考察: 『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7, 150면 참조.
- 137) 『승정원일기』 영조 1년 6월 3일 "左承旨李喬岳, 右承旨李挺周聯名疏曰: '……伏乞聖明特加三思, 收還備忘中勸月臨視之教, 克恢言路, 無惑群聽, 仍遞臣等之職, 以安私分, 不勝萬幸 臣等無任屏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 ; 정조 10년 12월 11일 "都承旨李秉模疏曰: '……且臣伏見夜下傳教, 院中諸僚, 以徹鞠傳教不爲頒布, 至於罪遞, 臣終宵耿耿, 竊爲殿下惜之也。天討方行,【四字削。】此時鉤覈, 不容少緩, 則承宣之繳還, 乃其職耳, 殿下何爲而有此過中之舉耶! 穆然深思, 還收成命, 是臣區區之望也。臣無任云云。'"
- 138) 『광해군일기』 권23, 5년 5월 22일(己卯) "進士李偉卿等上疏曰: '伏以臣等以討逆事, 本月十九日, 齊會于大學, 多士共議, 以臣李偉卿爲疏頭, 以臣李尙恒, 李紱爲疏色掌, 掌議則臣辛暲, 臣成夏衍曾爲是任, 而仍參疏事矣。疏議既定, ……僉議純同, 卽爲削籍, 衆議皆以爲快。臣等仍致齋於疏廳, 構一疏草'" ;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2월 20일 "不參疏儒生招入事, 命下之後, 當初書送謹悉之齋任, 率其參涉疏議之數人, 偃然入齋, 放肆無忌。" ; 경종 즉위년 9월 7일 "又以成均館官員, 以大司成意啓曰: '……故茲以辛巳, 丙申兩年事未盡者請改之意, 發論, 仍設疏廳, 而方外士友, 無一人相應者, 已極慚惡 而東, 西齋及四學下齋生, 舉皆無緣不參, 至於上齋生, 幾盡謀避, 僅與留在者七八人, 艱成議事之會, 而不得已居齋生差出疏頭, 又以無所據之說, 引嫌逃走。'" ; 영조 39년 3월 23일 "仍命疏頭, 疏色, 製疏, 寫疏儒生等進前, 下詢姓名居住訖 ……商夢曰: '臣於疏議出後爲掌議, 而封疏之例, 非一日卽行之事, 大議事, 設疏廳, 封章等事, 自有節次, 故自然稍遲矣。'"
- 139) 『승정원일기』 영조 2년 10월 19일 "且向者八道疏廳中一二怪悖之類, 憑藉疏舉, 多有作弊

년(1834)에 성균관에서 소청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6가지의 조목을 마련하여 순조의 윤허를 받은 일도 있었다.¹⁴⁰⁾

유생들이 상소를 올릴 때는 성균관으로부터 ‘삼가 잘 알았다[謹悉]’라고 허락하는 글을 받은 뒤 궐 앞에 나아가서 바쳤다.¹⁴¹⁾ 만약 성균관의 掌議 2명으로부터 ‘삼가 잘 알았다[謹悉]’라는 허락을 받지 못하면 상소를 올릴 수가 없었고, 승정원에서도 접수하지 않았다.¹⁴²⁾ 그 밖에도 文廟에 從享하는 일, 扁額의 하사

之端, 故臣等據理送言, 以爲禁斷之地, 此豈八道多士之所同爲哉! 不過若干無賴輩之事耳”; 영조 6년 1월 22일 “李春躋啓曰:‘命下矣 問于禮曹, 則以爲『摘奸于疏廳及儒生等所住處, 則疏頭柳組及疏下上京之類, 身病者外, 昨日傳教之後, 各自散去, 無一人留接』云矣 敢啓.’”; 정조 18년 5월 22일 “名曰疏廳, 酒肉淋漓, 世間豈有如此變怪之事乎!”

140) 『승정원일기』 순조 34년 3월 29일 “又以備邊司言啓曰:‘疏廳求請之弊, 令泮長另究禁斷之方, 條列論報, 更爲稟處施行之意, 頃有所筵奏矣 卽見成均館所報, 則其一, 無論京外儒生, 如無太學謹悉, 而先設疏廳, 則申明舊典, 自太學各別嚴禁, 主張儒生, 施罰懲勸, 亦爲指名報籌司, 繩以違越受教之罪事也 其一, 凡有治疏之事, 一日會議, 一日寫疏, 可以呈納, 而許多徵索推捉之弊, 專由於設置疏廳, 經歲經月, 作爲利窟故也 自今凡儒生治疏, 必於本館內公廡中爲之, 仍爲伏閣, 無得別定處所, 而如是定式之後, 如有從他處治疏之事, 該儒生直爲移送法司, 亟施重勸事也. 其一, 明倫堂郎館學儒生大議事治疏之所也, 事體自別, 方外疏儒, 毋得許會事也. 其一, 疏儒之憑藉求請, 稱以疏財者, 卽不過紙、筆、默等物也, 自今疏儒受謹悉來會泮宮後, 疏紙、筆、默, 量其所入, 自本館上下書寫, 與使喚使令, 亦爲定送, 使之舉行, 而儒生來會者, 各自持飯事也. 其一, 疏儒之多日伏閣, 自多貽弊, 卽日捧入, 與曉諭退送間, 自廟堂申飭政院, 俾無久滯之患事也 其一, 自今凡疏廳求請名色, 永爲防塞, 自廟堂知委於京各司及八道、四都校院等處, 俾爲揭板永遵之地, 自太學亦書示於齋學, 而此後若或有發簡求助之事, 則自簡到處, 這這押送來隸於法司, 查出其主張之人, 施以刑配事也 今此諸條, 實爲防弊之要道, 如是永遵, 不復毀割, 則士論自可增重, 雜類無敢假托, 而京外息擾, 民生受惠, 竝依所報, 一一施行, 另爲措辭捧甘於各司, 發關知委於諸道, 使知新頒朝令之如此, 而亦令太學及法司, 除尋常隨時察飭, 何如?’ 傳曰:‘允’”

141) 순조 때 疏廳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규정에는 소청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성균관으로부터 ‘삼가 잘 알았다[謹悉]’라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儒生 등을 처벌하였다. 그리고 정조의 말에 의하면, 儒生들이 상소할 때 성균관으로부터 ‘삼가 잘 알았다[謹悉]’라는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은 영조의 受教에 따라 정해진 법이라고 하였다. 『정조실록』 권32, 15년 2월 22일(丁卯) “又教曰:‘方外儒疏之待太學謹悉許捧, 卽先朝受教金石之典, 則疏中句語, 難免爽誤. 太學之無一言及於釐改者, 亦甚駭然, 齋任施罰’”; 『승정원일기』 순조 34년 3월 29일 “其一, 無論京外儒生, 如無太學謹悉, 而先設疏廳, 則申明舊典, 自太學各別嚴禁, 主張儒生, 施罰懲勸, 亦爲指名報籌司, 繩以違越受教之罪事也.”

142)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12월 3일 “上曰:‘儒生之欲爲疏學者, 受兩掌議謹悉然後伏閣, 曾

를 청하는 일, 書院의 건립 및 추가로 配享하는 일 등은 儒生疏에서 거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諡號나 官爵의 追贈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儒生疏는 승정원에서 신중히 살펴서 접수하였다.¹⁴³⁾ 지방의 儒生들이 상소할 경우에는 縣과 道를 통해 올리지 못하고 반드시 직접 서울에 올라와서 바쳐야 했다.¹⁴⁴⁾ 지방 儒生의 상소 중에서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정조 16년(1792)에 경상도의 儒生 1만여 명이 2차에 걸쳐 올린 이른바 ‘嶺南萬人疏’가 있었다. 영남만인소는 老論인 柳星漢의 상소를 반박하기 위해 영남의 儒生들이 올린 것으로, 유성한이 思悼世子를 포함하던 방법으로 정조를 포함하였다고 공격하였다.¹⁴⁵⁾ 이때 정조는 疏頭인 李瑀 등을 불러놓고 사도세자의 죽음 및 자신이 代理聽政할 때와 즉위하는 과정에서 당한 일에 대한 소회를 자세히 피력하고 비답을 내려주었다.¹⁴⁶⁾

儒生疏 중에서도 成均館과 四學의 儒生들이 올린 상소는 館學疏라고 하였다. 館學疏가 승정원에 도착하면 司謁을 통해 들여보냈으며, 국왕의 비답이 내리면 儒生들을 불러 비답을 듣게 한 뒤 비답을 正書해서 전해주었다.¹⁴⁷⁾ 館學疏는 국왕이 재계하는 날일지라도 국왕에게 물어본 뒤 들여보냈다.¹⁴⁸⁾

有定式 而今聞鄉儒之來伏於闕外者, 初不受得謹悉而屢日伏閣云, 寧有如許格例! 招致門將下屬, 疏儒雖三冬伏閣, 必無捧納之理. 以此意嚴明分付, 使之即爲退去, 可也 ”;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凡疏儒無太學謹悉者, 毋得捧入 【戊午十二月初三日】”;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 “儒疏, 無館學兩掌議謹悉, 毋得捧入 ”

143)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文廟從享莫重, 勿論京、鄉儒, 若有疏請之事, 嚴禁. 【甲申五月十五日晝講入侍時下教】 ○請額及建院、追配有禁令, 伏閣過三日, 則自政院退送之意, 入稟後, 招致啓板前, 曉諭退送 【戊午受教】 ○凡疏儒無太學謹悉者, 毋得捧入 【戊午十二月初三日】 ○儒生之疏請爵諡地贈者, 政院審慎捧入 【癸酉定奪】”;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 “請額、建院、追配事, 伏閣過三日, 自本院退送之意, 入稟後, 招致啓板前曉諭 ”

144)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 “儒疏, 毋得以縣道上送 ”

145)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4월 18일 “正言柳星漢疏曰:‘……’”; 정조 16년 윤4월 27일 “慶尙道儒生幼學李瑀……等疏曰:‘……’”; 정조 16년 5월 7일 “慶尙道幼學李瑀……等疏曰:‘……’”

146)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윤4월 27일 “壬子閏四月二十七日酉時, 上御熙政堂 坐直承旨與嶺南疏儒、江原道慰諭御史、前杆城郡守入侍時 ”

147) 『銀臺便攷』 「禮房攷」 劄子 “館學儒生上疏到院, 則以司謁入啓, 批下後聽批. 【聽批後, 批答正書傳給, 有‘答曰.’二字】”

148)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館學疏, 雖值齋日, 入稟捧入 ”

(3) 기타의 上疏

① 縣道疏

縣道疏는 지방에 있는 신하가 거주하고 있는 縣과 道를 통해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그래서 縣道疏를 從縣道上疏라고도 불렀다. 이처럼 縣과 道를 통해서 상소를 올린 기록은 조선후기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효종 즉위년(1649)에 掌令 宋時烈이 沃川에서 縣과 道를 통해 辭職疏를 올린 기록이 처음 보이고, 『승정원일기』에는 그보다 앞선 인조 8년(1630)에 兪伯曾이, 인조 13년(1635)에 전라도의 生員 洪連 등이 각각 縣道疏를 올린 기록이 보인다.¹⁴⁹⁾

縣道疏에 대해서는 올리는 절차와 금지하는 규정 등이 엄격하였다. 첫째, 縣道疏는 반드시 縣과 道를 통해서 올려야 했고, 重臣이라 하더라도 家僮을 시켜서 승정원에 직접 바칠 수가 없었다.¹⁵⁰⁾ 둘째, 새로 관직에 제수된 관원 중 원래 지방에 있던 관원이 병을 이유로 상소할 경우, 말미를 받아 지방에 내려간 관원이 상소할 경우, 지방의 儒生이 상소할 경우, 지방에 있는 당하 臺諫이 연이어 辭職疏를 올릴 경우에는 縣과 道를 통해 상소를 바칠 수가 없었다.¹⁵¹⁾ 다만 새로 관직에 제수된 관원 중 말미를 받아 지방에 내려가 있던 관원은 縣과 道를 통해 상소를 올릴 수 있었다. 셋째, 국왕이 재계하는 날에 받은 縣道疏는 時事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모두 승정원에 보류해두었다.¹⁵²⁾ 그러나 時事

149) 『효종실록』 권1, 즉위년 7월 25일 壬午 “掌令宋時烈在沃川, 以縣道上疏辭職, 上優批不許.”; 『승정원일기』 인조 8년 3월 26일 “……嗚呼! 人臣憂國, 不以內外而有間, 古人有諷裏言事者, 有數因縣道上言者, 況臣身雖微末, 義同休戚者乎! ……伏望殿下, 勿以人而廢言 臣無任云云” 下備邊司. 回啓【缺】: “粘連啓下是白有亦. 兪伯曾, 誠心憂【缺】旨陳章……”; 인조 13년 3월 10일 “全羅道生員洪連等上疏: “……列邑之士, 齊會共議, 採其實跡, 因縣道仰達天闈 ……不勝屏營之至, 謹昧死以聞.””

150)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縣道疏家僮直呈者, 勿論重臣, 一併勿捧. 【乙亥十二月二十八日下教】”

151) 『銀臺便攷』 「吏房攷」 呈辭 “朝臣之受由下鄉者外, 除職前在外者, 毋得縣道呈病. 【戊戌十二月十五日, 舉條蒙允.】”; 「工房攷」 疏章 “在外堂下三司之臣, 連呈縣道辭職疏者, 切勿捧入. 【壬戌二月二十七日下教.】”; 「通攷」 狀啓 “丙辰十一月二十九日, 受由下鄉人, 毋得縣道辭職事, 下教. ○儒疏, 毋得以縣道上送 【禁令.】”;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 “堂下三司連呈者, 一切勿捧 ○儒疏, 毋得以縣道上送 ”

152) 『銀臺便攷』 「工房攷」 疏章 “凡縣道疏, 無論言事有無, 若值齋日, 則留院公事書入 ”

에 대해 언급한 三司의 縣道疏는 해당 관원이 遞差되었다라도 국왕에게 물어본 뒤에 들여보냈고, 시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으면 縣道疏를 도로 내려 보냈다.¹⁵³⁾ 넷째, 국왕이 재계하는 날 승정원에 보류해둔 縣道疏를 들여보내라고 명하면 승정원에서는 '승정원에 보류해둔 상소를 들이라'라는 내용의 전교와 해당 상소에 대한 비답을 같이 반포하였다.¹⁵⁴⁾ 다섯째, 국왕이 縣道疏에 대해 비답을 내리면 승정원에서 有旨를 작성해서 해당 道의 감사에게 내려 보내 당사자에게 대신 전하게 하였다.¹⁵⁵⁾

2) 劄子の 분류

(1) 大臣의 劄子

〈표 2〉에 의하면 대신이 올린 차자의 횟수는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조선전기의 실록인 『중종실록』에는 옥당과 대간이 올린 차자가 대부분이고 대신이 올린 차자는 1건 뿐인데 반해 조선후기의 실록인 『영조실록』에는 대신이 올린 차자가 대부분이고 옥당과 대간이 올린 차자는 전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대신이 차자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시기는 선조 때부터 보인다. 선조 초기부터 대신이 올린 차자가 자주 보이기 시작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신이 올린 차자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대신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로 차자를 자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차자가 대신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153) 『銀臺便攷』「工房攷」疏章 “三司若縣道封章而有言事, 則雖遞職, 入稟入啓.”; 「通攷」狀啓 “三司縣道封章, 有言<辭→事>, 則雖已遞職, 入稟捧入, 若無言辭<辭→事>而既已遞職, 則還下送。○縣道, 勿論言辭<辭→事>有無, 若值齋日, 則留院公事書入。”

154) 『銀臺便攷』「吏房攷」疏批 “齋日留院疏, 有入之之命, 則批下後, 以‘留院上疏入之傳教, 書出。’之意, 入稟, 與批答同爲頒布【若其日已有留院公事入之之傳教, 則更不以上疏入之書出。○縣道疏亦然, 而若過齋後批下, 則不爲書出。】”

155) 京畿監司와 留守가 서울에서 올린 상소일지라도 書目을 갖추어 장계와 함께 올린 경우에는 縣道疏에 대해 내린 비답과 마찬가지로 비답을 有旨로 작성해서 보냈다. 『銀臺便攷』「吏房攷」疏批 “縣道上疏批下, 則成送有旨于該道臣處, 使之傳諭”; 『六典條例』「吏典」承政院 總例 “縣道疏【堂下三司連尊者, 一切勿捧 ○儒疏, 毋得以縣道上送】批下, 則成送有旨于該道臣處, 使之傳諭【畿伯及留守, 雖在京第上疏, 具書目狀啓上送, 則批答成送有旨。】”

있다.

대신이 올리는 차자에서는 私的인 내용과 公的인 내용을 모두 거론할 수가 있었으므로, 앞에서 서술했던 '상소의 분류'에 따라 그 내용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우선 私的인 내용으로는 辭職, 致仕, 引嫌 등을 대신의 차자에서도 거론할 수가 있었으나, 侍從臣들의 상소에서 거론하던 乞郡과 徑出·徑行은 대신의 차자에서 거론할 사안이 아니었다.¹⁵⁶⁾ 公的인 내용으로는 言事와 應旨가 주를 이루었고, 執藝는 대신을 제외한 言官이 아닌 신하들의 임무였을 뿐만 아니라 대신은 時事에 대해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執藝에 관한 차자를 별도로 올릴 필요가 없었다.¹⁵⁷⁾ 그리고 이런 차자 외에도 대신이 草土臣이나 負罪臣의 이름으로 차자를 올리거나 縣과 道를 통해서 차자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였다.¹⁵⁸⁾

대신의 차자가 승정원에 도착하면 승정원에서는 司謁을 통해 入啓하였고, 만약 국왕이 재계하는 날에 대신의 차자가 도착하면 승정원에 보관해두겠다는 뜻으로 보고하거나 대신의 차자가 도착한 사실을 보고하고 곧바로 入啓하였다.¹⁵⁹⁾ 국왕이 대신의 차자를 돌려보내라고 명하면 史官을 보내 돌려주었다.¹⁶⁰⁾

156) 『승정원일기』 영조 5년 9월 25일 “領議政洪致中筭曰:‘……乞命亟先收還新命, 回授可堪之人, 使史事毋曠焉’”; 영조 29년 9월 18일 “領議政金在魯筭曰:‘……夫七十致仕, 昭載禮法, 先王所以優衰老而養廉恥也 ……伏乞睿慈俯垂矜諒, 善爲導達, 亟賜鑄免, 公私不勝幸甚. 取進止.’”; 정조 즉위년 9월 2일 “右議政鄭存謙筭曰:‘……茲敢短章自訟, 伏乞聖明卽賜斥退, 以謝公議, 仍治臣昧然冒進之罪, 以靖私義焉’”

157) 『승정원일기』 효종 2년 5월 24일 “領議政金增筭子 大概應旨進言事, 入啓”; 경종 즉위년 7월 17일 “領議政金昌集筭子. 大概國家有故, 大政愆期, 而吏曹判書權尙游, 宿病復發, 日就危重, 欲待其差復, 則遲速難以預度, 恐不可不及時變通 判決事沈壽賢, 以均田使下去, 其所竣還, 似在數月之後, 本院久無長官, 詞訟積滯, 亦涉可慮 竝加裁量而處分 事, 入啓.”

158) 대신이 '草土臣'으로서 올린 차자의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대신인 蔡濟恭이 '負罪臣'으로서 올린 차자가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대신이 '草土臣'으로서 차자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11월 18일 “負罪臣蔡濟恭筭曰:‘……’”; 숙종 8년 8월 9일 “判中樞府事金壽興筭曰:‘……凡有文字, 所當自縣道上聞, 而縣道迂遠, 猥以椽吏, 直進喉司, 尤不勝惶恐之至. 取進止.’”; 경종 2년 10월 28일 “又啓曰:‘左議政崔奎瑞筭子, 自縣道來到本院, 而以大殿誕日留院之意, 敢啓’”

159) 『銀臺便攷』 「吏房攷」筭子 “大臣筭子到院, 則以司謁入啓. 【入啓後, 以未承批入稟等事, 吏房舉行. 玉堂筭子到院, 則以司謁入啓, 批下後聽批. 【大臣、玉堂筭子齋日到院, 則留院之意微稟, 若如動駕還寢等事, 則雖齋日, 直爲微稟入啓. ○大臣筭子時急懲討事, 雖齋日, 微稟直爲入啓.】”

(2) 玉堂의 劄子

『중종실록』에 기록된 차자는 옥당의 차자와 대간의 차자가 대부분이며, 그중에서도 옥당의 차자가 가장 많아 절반 가까이나 된다. 그러나 『영조실록』에 기록된 옥당의 차자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여 『중종실록』에 비해 사용 빈도가 절반가량 줄었음을 알 수가 있다. 중종~선조 사이에는 啓辭, 草記, 書啓 등의 문서가 새로 성립되었던 시기로, 차자 이외에도 옥당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많아짐에 따라 옥당의 차자도 대간의 차자와 함께 사용빈도가 줄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¹⁶¹⁾ 그러나 조선전기에 비해 옥당의 차자를 기록한 빈도가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대간의 차자에 비하면 옥당의 차자는 조선후기에도 대신의 차자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후기에도 옥당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 중 하나로 차자를 자주 사용하였음은 『弘文館志』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홍문관지』의 내용과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옥당의 차자를 참고하면, 옥당은 私的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자를 올릴 수 없고 公的인 내용에 대해서만 차자를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자는 그 내용에 따라 言事劄子, 應旨劄子, 處置劄子로 나눌 수 있겠다. 言事劄子は 時事에 대해 언급한 차자로, 所懷의 진술, 諫言의 수용, 儒賢의 초빙, 罪人의 처벌 등 당시의 국정 현안에 대해 옥당들이 연명으로 올리던 차자이다.¹⁶²⁾ 특히 兩司의 간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60) 『銀臺便攷』 「吏房攷」 劄子 “大臣劄子有還送之命, 則史官微稟進去【丁巳十月十七日, 右議政李劄子到院捧入矣, 以司謁口傳下教曰: ‘引義過矣 卽參籌坐, 此劄子, 則不出大槩, 卽爲還送于大臣處.’ 事, 下教。故仍以錄事, 以此下教傳之而還送矣 以司謁下教曰: ‘雖無史官進去之命, 何不微稟而循例以錄事還送耶! 當該承旨推考’】”

161) 草記에 대해서는 이강욱, 2009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 참조. 啓辭에 대해서는 이강욱, 2010 앞의 논문 참조. 書啓가 독립적인 문서로 성립된 시기는 명종 중기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강욱, 2017 「書啓에 대한 考察」 『한국문화』 80, 5-19면 참조.

162) 정조대 『弘文館志』 「館規」 第4 劄疏 “凡有劄論之事【或陳所懷, 或請從兩司某啓, 請寢某命, 或請罷請遞兩司之官, 庶官, 則否】 , 上、下番, 必前期簡通【闕門已閉, 事若緊急, 只入番爲之後, 發簡。】於時任諸員。”; 『승정원일기』 효종 8년 4월 10일 “玉堂劄曰: ‘請謝恩使以下書狀等加資還收’ 事, 答曰: ‘省劄具悉 旣罪各異, 似不當混同論也’ ”; 영조 1년 4월 8일 “校理洪鉉輔、副修撰李重協等劄曰: ‘伏以臣等卽伏聞左議政臣鄭滯將以世子相見禮後旋即俶裝還鄉云, 不勝愕貽悶歎之至 ……伏願殿下特降天札, 申申勉諭, 示之以誠心, 加之以殊禮, 則以大臣愛君憂國之誠, 豈不幡然改圖爲殿下死而後已哉!’ ”; 영조 1년 11월 9일 “校

양사의 요청에 따라 삼사가 합동으로 국왕에게 간쟁하였고, 이와 같은 合辭 이외에도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옥당이 별도로 차자를 올려 간쟁하였다.¹⁶³⁾ 應旨筭子是 災異가 발생하여 국왕이 求言한 데 대해 옥당들이 부응하여 올리던 차자를 가리킨다.¹⁶⁴⁾ 그 내용은 時事에 대해 거론하는 것 및 국왕의 교육이나 덕성을 강조하는 것 등 다양하였다. 處置筭子是 옥당이 兩司의 避嫌한 臺諫을 處置할 때 올리던 차자를 가리킨다. 處置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대간이 避嫌한 동료 대간에 대해 피험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遞差하거나 出仕시킬 것을 국왕에게 청하는 것이다.¹⁶⁵⁾ 이때 처치는 피험한 대간이 소속된 관사의 동료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대간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당 관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동료 대간이 없을 경우에는 사헌부의 대간이면 사간원의 대간이 처치하고 사간원의 대간이면 사헌부의 대간이 처치하였다.¹⁶⁶⁾ 만약 兩司 모두

理臣李秉泰、修撰臣權禕等筭曰：‘伏以臣等即伏聞獻納蔡膺福陳疏，以尹汲復科事，有所論請，已不勝其駭嘆。……臣等竊謂汲之復科不可不還寢，而膺福之職，亦宜遞差，以伸公議，不勝幸甚 取進止’； 영조 5년 3월 5일 “校理李顯謨、副修撰尹東衡等筭曰：‘伏以臣等以鞫廳罪人坦依律處斷事，與兩司合辭力請，未蒙允許，群情抑鬱，輿論沸騰。……請鞫廳罪人坦依律處斷。取進止’”

- 163) 정조대 『弘文館志』 「館規」 第4 請對 “兩司有大議論累啓不允，則兩司要與本館同力並爭，謂之合辭。兩司以其事簡通于本館，本館官員齊會問安廳陳筭，必與兩司啓辭同時上徹 知時、請坐、拜筭等諸儀，與陳筭同【兩司有遠竄以上啓辭，簡通本館，停啓時，亦爲簡通】。若兩司所論事係重大，則合辭之外，本館或陳筭以準請爲期。”
- 164) 『인조실록』 권4, 2년 1월 12일 丁卯 “副提學鄭經世應旨上筭，請寬民力以悅天心”； 19년 2월 3일 戊申 “玉堂以天變應旨上筭極陳時弊，且言宜置輔養官教誨元孫，上納之。”； 『효종실록』 권9, 3년 10월 18일 丙辰 “玉堂應旨上筭，上嘉納之”
- 165) 영조대 『弘文館志』 「式例」 第6 處置式 “僚臺中無故者據其引避之辭，定其立落，以啓辭上請，【如云理直而被斥不當遞，請某官某出仕，即所謂立也；理曲當遞，請某官某遞差，即所謂落也】此所謂處置。” 處置啓辭에 대해서는 이강욱, 2014 앞의 논문 참조.
- 166) 영조대 『弘文館志』 「式例」 第6 處置式 “如憲府官員引避，憲僚中無故者處置；若憲僚皆有故，或皆有引嫌之事連次避嫌，則諫院官員無故者處置；而若諫僚皆有故，或皆有引嫌之事連次避嫌，則兩司避嫌，都送于本館，本館筭請立落，謂玉堂處置”； 『銀臺條例』 「刑攷」 臺諫 “避嫌批答，只承勿辭，無勿退待之命，則承旨稟旨，退待物論，而處置【各自該司爲之，有故，則兩司互相處置；竝有故，則玉堂處置。】後，牌招出仕。”； 『六典條例』 「吏典」 司憲府臺體 “處置之規，有本司同臺，則本司請牌，如無同臺，兩司互相移送，而違牌，則移送玉堂，至申後，還送本司，不得經夜”

처치할 관원이 없을 경우에는 옥당이 피험한 양사의 대간을 처치하였다.¹⁶⁷⁾ 대간이 피험한 동료 대간을 처치할 경우에는 처치 내용을 啓辭로 작성하여 올렸으나, 옥당이 처치할 경우에는 차자로 작성하여 올렸다. 옥당이 처치차자를 올릴 때는 양사의 掌務書吏 중 1명이 대간의 避嫌啓辭 초본과 피험한 대간의 명단을 적은 座目을 가지고 와서 홍문관에 전달하면, 옥당들이 차자를 올릴 때의 절차에 따라 대간의 처치에 관한 차자를 작성해서 올렸다.¹⁶⁸⁾ 옥당들이 국왕에게 所懷를 아뢰거나 양사의 요청을 수용하기를 청하거나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일 등에 대해 차자를 올릴 때는 모두 연명으로 올려야했으나, 대간의 처치에 관한 사안은 1명의 옥당이 독자적으로 차자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였다.¹⁶⁹⁾ 이처럼 옥당이 피험한 대간을 처치한 차자는 명종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¹⁷⁰⁾

『홍문관지』에는 차자와 상소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리기까지의 절차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차자를 작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다. 옥당들이 국왕에게 차자를 올릴 일이 있으면, 上番 玉堂과 下番 玉堂이 미리 전체의 현임 옥당들에게 簡通을 보내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다.¹⁷¹⁾ 그런 뒤 冊吏가 入番하는 옥당에게 차자를 작성하기 위해 여는 회의 시각을 언제로 정할지 물어서 그 시각을 집에 있는 옥당들에게 통지하고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¹⁷²⁾ 두 번째 단계는 차자를 작성하는

167) 위와 같음.

168) 정조대 『弘文館志』 「館規」 第4 處置 “兩司掌務吏中一人持避辭草及引避諸臺姓名座目來傳于本館【如憲府官員引避後於諫院，則憲府掌吏來傳，諫院爲後，則諫吏來】，本館議定立落，陳劄上請，而冊吏稟時、請坐及一會禮數諸儀，並與陳劄同【避草申前來，則當日爲之，申後來，則翌日爲之，而事係緊急，則不拘常規，雖夜深，只入番爲之。】。”

169) 정조대 『弘文館志』 「館規」 第4 疏劄 “凡有劄論之事【或陳所懷，或請從兩司某啓，請寢某命，或請罷請遞兩司之官，庶官，則否】，上、下番，必前期簡通【闕門已閉，事若緊急，只入番爲之後，發簡】，於時任諸員受謹悉，則【處置外，不得獨劄。】冊吏稟時于入番 ”

170) 『명종실록』 권30, 19년 10월 17일 丙戌 “弘文館副提學閔箕等上劄曰：‘政院擅囚政府下人，而兩司以未卽糾劾，至於引嫌不出。以政院所失觀之，則雖有關於體統，而若因此至遞臺諫，則亦似騷擾 請兩司竝命出仕’ 答曰：‘如啓’ ”； 권31, 20년 1월 11일 己酉 “弘文館副提學金貴榮等上劄曰：‘兩司以臺諫去就不可苟且，累爲引嫌，勢難仍在其職，請大司憲吳祥以下、大司諫姜士弼以下竝命遞差。’ 答曰：‘如啓。’ ”

171) 주) 169 참조.

단계이다. 隨廳書吏가 전체 옥당에게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여 옥당들이 홍문관에 모두 모이면, 서열에 따라 예를 행한 뒤에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¹⁷³⁾ 차자의 내용을 상의하여 초본을 작성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 정하고, 초본을 正書한 뒤 국왕이 읽기에 편리하도록 구절마다 붉은 색으로 점을 찍었다.¹⁷⁴⁾ 세 번째 단계는 차자를 국왕에게 올리는 단계이다. 차자가 작성되면, 홍문관의 長官인 副提學은 차자의 초본을 가지고 하위의 옥당은 차자의 정본을 가지고 읽으면서 대조한 뒤에 奇別書吏를 불러서 차자의 내용을 요약한 ‘大概’를 작성하게 하였다.¹⁷⁵⁾ 하위 옥당이 차자를 가진 책리를 앞세우고 승정원에 나아가서 승지에게 차자를 전해주고 물러나되, 승정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啓版을 향해 절을 하였다.¹⁷⁶⁾ 옥당의 차자가 승정원에 도착하면 승정원에서는 司謁을 통해 入啓하였고, 만약 국왕이 재계하는 날 옥당의 차자가 도착하면 승정원에 보관해두겠다는 뜻으로 보고하거나 옥당의 차자가 도착한 사실을 보고하고 곧바로 入啓하였다.¹⁷⁷⁾ 국왕이 차자에 대한 비답을 내려주면 하위 옥당이 승정원에 나아가서 비답을 받았다.¹⁷⁸⁾

172) 정조대 『弘文館志』 「館規」 第4 疏筭 “冊吏稟時于入番, 入番以某時分付, 冊吏以分發稟知于在家諸員, 受進不進然後……”

173) 정조대 『弘文館志』 「館規」 第4 疏筭 “使隨廳書吏請坐, 齊會本館 而長官入就席次【長官入來時, 諸司員具公服避入下番房, 使冊吏出稟禮數於長官, 如令除禮, 長官直入上番房, 諸司員以私禮就見】, 東壁進前相揖, 退立其位, 西壁進前相揖於長官及東壁, 又退立其位, 南床位進前相揖於長官及東、西壁, 又退立其位訖。長官外東·西壁、南床位, 卽於其位, 各自相揖正坐【無長官, 則此禮無之】。”

174) 정조대 『弘文館志』 「館規」 第4 疏筭 “相議起草, 而所見如有參差, 則從衆議定【如十員內六員欲陳筭, 四員欲否, 則只六員拜筭, 意見相半, 則各自陳疏, 不得爲之】, 正書後【正本, 最下位書之, 中草, 次下位書之, 而姑罷正坐而書之】, 逐句點朱【國恤時, 用青 ○本館陳筭, 古無點朱之例, 中廟沖年承統, 爲便御覽, 始點朱以句絕之】以便上覽”

175) 정조대 『弘文館志』 「館規」 第4 疏筭 “拜筭時, 長官以下各就其位, 更爲相揖【禮, 則上同。】坐定, 長官持草本, 下位持正本讀之【如無長官, 次官執筭。】讀訖, 招奇別書吏, 出大概, 仍其坐俯伏而起。”

176) 정조대 『弘文館志』 「館規」 第4 疏筭 “使冊吏持筭子前行, 下位隨往, 詣政院呼望後, 入楹內, 向啓版跪拜, 仍傳于承旨, 退就位, 向啓版辭拜而出”

177) 주) 159 참조.

178) 정조대 『弘文館志』 「館規」 第4 疏筭 “聽批時, 下位進詣政院。”

(3) 臺諫의 劄子

〈표 2〉에 의하면 『중종실록』에 기록된 차자 중 대간의 차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많고, 옥당의 차자와 함께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徐居正이 국왕에게 구두로 아뢰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자의 사용을 건의하여 허락을 받을 때부터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言官과 侍從의 책임을 담당하는 대간과 옥당이 구두로 아뢰던 것을 글로 써서 아뢰면서 우선적으로 활용되었던 문서가 차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오면 대간의 차자는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진다. 『영조실록』에 기록된 대간의 차자가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후기에는 대간이 국왕에게 아뢰는 일이 있을 때 차자를 사용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간이 차자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진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중종 이후의 실록에서 ‘劄曰’과 ‘劄子曰’로 검색해 보면, 『인종실록』과 『명종실록』에 기록된 대간의 차자가 『중종실록』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선조실록』에 이르면 대간의 차자는 아주 드물게 보인다. 중종~선조 사이의 기간은 啓辭, 草記, 書啓 등의 문서가 새롭게 성립된 시기와 일치한다. 신하와 각 관사가 차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왕에게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문서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대간이 차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라고 추정해볼 수 있겠다. 특히 대간의 경우에는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로 啓辭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전에 차자로 아뢰던 사안을 점차 기사로 아뢰게 되면서 차자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게 된 것이다.¹⁷⁹⁾ 그렇다고 조선후기에 대간이 차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은대편고』, 『공거유람』, 『육전조례』의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조선후기의 실록 등에 기록된 대간의 차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⁸⁰⁾

179) 臺諫의 啓辭에 대해서는 이강욱, 2014 앞의 논문 참조.

180)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玉堂聯名劄批, 過申時不下, 則微稟, 門限、夜深、經宿, 依例微稟【兩司劄無稟】”; 『公車類覽』 「疏書劄凡例」 “劄子, 大臣、國舅及三司外, 無得聯劄, 至於獨劄, 三司古或有之, 今則大臣外, 其例罕有。”; 『六典條例』 「吏典」 司憲府 臺體 “長官獨劄, 而下位毋得爲之【兩司聯劄, 則雖非長官, 勿拘。】”; 『영조실록』 권84, 31년 5월 29일 壬寅 “執義徐命膺、持平元仁孫聯名上劄曰”; 권85, 31년 6월 4일 丙午 “大司諫俞彥民、執義徐命膺聯名劄曰”; 권99, 38년 윤5월 28일 庚寅 “大司憲李奎采上劄曰”; 『정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대간의 차자를 참고하면, 대간은 옥당과 마찬가지로 私的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자를 올릴 수 없고 公的인 내용에 대해서만 차자를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간의 차자는 그 내용에 따라 言事箚子와 應旨箚子로 나눌 수가 있겠다. 言事箚子是 時事에 대해 언급한 차자로, 대간들이 국왕의 조치에 대한 반박과 罪人의 처벌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 연명으로 올리던 차자이다.¹⁸¹⁾ 應旨箚子是 災異가 발생하여 국왕이 求言한 데 대해 대간들이 부응하여 연명으로 올리던 차자이다.¹⁸²⁾

(4) 其他 箚子

『公車類覽』에는 대신과 三司 외에 國舅도 차자를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¹⁸³⁾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에도 실제로 國舅가 올린 차자가 실려 있다.¹⁸⁴⁾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한 사료에는 대신·국구·대간·옥당 이외의 다른 관원들이 올린 차

조실록』 권4, 1년 11월 28일 庚寅 “大司諫柳翬上箚曰。”

181)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10월 13일 “大司諫嚴瑀、正言任希教等箚曰：‘伏以嗚呼！殿下今日之舉，何爲而至於如是耶！……倘殿下廓然回思，卽許引接，使臣等畢辭於前，或者臣言得概於聰聽，聖德有光於轉環，則此不獨臣等之幸，實宗社無疆之福。如其不效，治臣等之罪，以礪邦憲，臣等雖誅死萬萬，亦所甘心矣。取進止。’”； 정조 10년 5월 16일 “司憲府執義李延伋、司諫趙弘鎮、掌令鄭景祚、獻納申耆、正言李益運等箚曰：‘伏以王世子邸下薨逝，誠千萬夢想之所不到也。……臣等謂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亟令王府拿鞠嚴問，快施當律，繼不可已也。至於藥院提舉之臣，旣在保護之重地，徒信庸醫之妄論，審量未盡，療治失宜，大臣提調，則拘於格例，雖不敢直請勘斷，而提調李文源、副提調李敬養，竝施削黜之典，宜矣。取進止。’”

182) 『승정원일기』 인조 6년 8월 3일 “諫院箚子，大概求言陳弊事，入啓 答曰：‘觀爾等箚辭，其所陳，正中予病，爾等愛君之誠，殊甚嘉尙。予雖不敏，敢不服膺而改過哉！’”； 인조 6년 8월 14일 “憲府箚子，應旨陳言事，答曰：‘箚辭無非格言至論，當以此常自警而力行焉。’”； 『인조실록』 권40, 18년 6월 13일 癸亥 “憲府應旨進箚 略曰：‘求言無採用之誠，用人無公明之誠，上下無交孚之誠，臣隣無任事之誠，此四者，爲當今百弊之源也。’”； 『현종실록』 권13, 8년 5월 2일 乙巳 “司憲府應旨上箚，極陳修省之道，上優答之。”

183) 『公車類覽』 「疏書箚凡例」 “箚子，大臣、國舅及三司外，無得聯箚，至於獨箚，三司古或有之，今則大臣外，其例罕有。”

184) 『숙종실록』 권1, 즉위년 10월 26일 丙辰 “淸風府院君金佑明，又以扈衛軍官勿汰事陳箚，乞解大將，上不許。 ”； 『승정원일기』 숙종 9년 6월 29일 “領敦寧閔維重箚子，大概：‘臣之兼帶宣惠提調，尙未鐫解，瘼曠已久，狼狽益甚，不得不更申危懇，乞蒙矜許。事。’”； 순조 4년 2월 29일 “領敦寧金祖淳箚曰：‘……’”

자도 기록되어 있다. 우선 <표 2>의 『중종실록』에 기록된 기타 차자 13건을 분류해보면, 侍講院 또는 侍講院의 관원이 올린 차자가 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藝文館의 奉敎가 올린 차자가 3건이며, 玉堂·郎廳·都事 등이 연명으로 올린 차자가 2건이고, 武靈府院君 柳子光이 올린 차자가 2건이며, 議政府·六曹·府院君 등이 함께 올린 차자가 1건이다.¹⁸⁵⁾ <표 2>의 『영조실록』에 기록된 2건의 기타 차자 중 1건은 山林으로서 이조판서에 제수된 朴弼周의 차자이고, 1건은 이조판서 李昌壽와 이조참의 徐命膺이 연명으로 올린 차자이다.¹⁸⁶⁾ 조선후기에 이조판서가 차자를 올린 기록은 『정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그 외에 奎章閣提學과 都承旨가 올린 차자도 보인다.¹⁸⁷⁾

4.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上疏와 劄子の 형식상 차이 및 내용상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上疏와 劄子の 문서형식상 차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185) 『중종실록』 권2, 2년 1월 12일 丙戌 “弘文館校理金世弼、副校理金安國、都摠府都事申鏞、刑曹佐郎金安老上劄曰 ”; 권2 2년 4월 13일 丙戌 “柳子光上劄曰 ”; 권2, 2년 4월 16일 己丑 “柳子光上劄曰。”; 권2, 2년 4월 23일 丙申 “賜暇讀書吏曹正郎金世弼、都摠府都事申鏞、吏曹佐郎柳雲、弘文館修撰金安老等上劄曰 ”; 권6, 3년 6월 18일 甲申 “(奉敎)李希曾等上劄曰 ”; 권6, 3년 7월 20일 丙辰 “(政府、六曹、府院君等)復上劄曰。”; 10년 9월 19일 壬寅 “藝文館奉敎許洽等上劄曰。”; 권23, 17년 4월 19일 乙未 “侍講院輔德崔重演等上劄曰。”; 권58, 21년 12월 14일 壬戌 “藝文館奉敎成倫等上劄曰 ”; 권58, 22년 4월 4일 庚戌 “侍講院上劄曰。”; 권58, 22년 4월 23일 己巳 “侍講院上劄曰 ”; 권59, 22년 5월 4일 庚辰 “侍講院上劄曰。”; 권74, 28년 5월 25일 丁卯 “侍講院輔德金公藝等上劄曰 ” () 안의 내용은 차자를 올린 사람의 직명이나 성명 등을 필자가 보충한 것이다.
- 186) 『영조실록』 권63, 22년 5월 24일 己未 “(吏曹判書朴弼周)仍上袖劄, 上卽披覽 其劄曰 ”; 권102, 39년 7월 7일 壬戌 “(吏曹判書李)昌壽、(參議徐)命膺聯劄曰 ”
- 187) 『정조실록』 권5, 2년 1월 30일 辛卯 “吏曹判書金鍾秀上劄曰 ”; 권13, 6년 3월 24일 辛酉 “奎章閣提學金鍾秀上劄曰 ”; 『銀臺便攷』 「通攷」 院中事跡 “孝宗朝, 都承旨宋浚吉陞資後, 劄曰: ‘以從二品爲都承旨者陞正二品, 則不敢仍職, 盖以官聯有序不得相攙越故也。臣猥蒙恩渥, 已躋卿列, 今若仍據近密, 則是眞爲左右望之龍斷, 乞許遞免 ’ 批曰: ‘以正二品爲都承旨, 不無古規, 卿其勿辭 ’ ”

〈표 3〉 上疏와 劄子の 형식 비교

分類	上疏의 형식	劄子の 형식
序頭	① 長銜〈資級+本職+兼職〉	① 單銜〈本職〉
	② 臣+姓名	② 臣+姓名
	③ 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言于尊號主上殿下	③
本論	④ 伏以云云	④ 伏以云云
	⑤ 臣無任屏營祈懇之至 謹味死以聞	⑤ 取進止
末尾	⑥ 年號幾年某月日	⑥ 年號幾年某月某日
	⑦ 單銜+臣+姓+署名	⑦

위의 〈표 3〉에서 두 문서의 차이 중 우선 지적할 것은 上疏에 비해 劄子は ③과 ⑦의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③은 의례적인 인사말이고, ⑦은 ①과 ②의 내용을 말미에 재차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上疏에 비해 劄子は ①과 ⑤의 기록이 간략하다는 점이다. 上疏는 ①에 資級 및 本職과 兼職 등의 職名을 모두 적었으나 劄子は 職名 중 本職만을 적었고, 上疏는 ⑤에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하고 긴 套式語를 사용하였으나 劄子は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取進止’만을 적었다. 두 문서의 비교를 통해 上疏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말을 사용하고, 문서의 서두와 말미에 모두 작성자의 신분을 밝혀, 劄子에 비해 정중하면서도 격식을 중시하는 문서였음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劄子は 의례적인 말과 중복적인 말을 생략하여, 上疏에 비해 書式이 간단한 문서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문서의 형식상 차이일 뿐이고 그 내용의 長短에 있어서는 두 문서에 차이가 없었다. 즉 본론의 ‘伏以云云’에 기록되는 내용은 劄子라고 해서 上疏에 비해 짧거나 간략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徐居正이 宋나라의 劄子를 언급하면서 ‘간편해서 사용할 만하며, 신하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자세히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한 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¹⁸⁸⁾ 즉 차자가 문서의 형식은 간단하지만 본론의 내용은 얼마든지 자세히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8) 『성종실록』 권26, 4년 1월 21일 壬子 “大司憲徐居正啓曰:‘……考古制, 宋時有劄子, 簡易可行, 凡所欲言, 無不備載矣.’”

다음으로 上疏와 劄子の 분류를 참고하여 내용상의 차이 및 사용자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上疏와 劄子は 문서형식상의 차이 이외에도 두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신하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上疏는 고위 관원에서 하위 관원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었고, 현직 관원은 물론 전직 관원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관원이 아닌 儒賢과 儒生들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劄子は 일부의 관원만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大臣·玉堂·臺諫이 사용하는 문서가 되었다.¹⁸⁹⁾ 이들은 劄子和 함께 上疏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차자를 사용할 수 있었던 관원의 범위를 大臣·玉堂·臺諫으로 한정했을 때 그들이 올린 劄子の 내용은 上疏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상소의 분류'에서 살펴보았던 上疏의 내용을 劄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上疏와 劄子の 분류 및 내용 비교

上疏의 분류		劄子の 분류		
		大臣의 劄子	玉堂의 劄子	臺諫의 劄子
私的인 上疏	辭職	○	×	×
	致仕	○	×	×
	乞郡	×	×	×
	徑出	×	×	×
	引嫌	○	×	×
	草莽	×	×	×
	草土	○	×	×
	負罪	○	×	×
公的인 上疏	言事	○	○	○
	應旨	○	○	○
	執藝	×	×	×
	儒生	×	×	×
其他 上疏	縣道	○	×	×

189) 國舅도 차자를 사용하였으나 그 숫자가 많지 않아 앞에서 기타로 분류하였다.

大臣은 私的인 내용이나 公的인 내용이나 상관없이 모두 劄子를 올릴 수가 있었다. 다만 ‘上疏의 분류’ 중 乞郡疏와 徑出·徑行疏는 侍從臣이 올리던 상소였고, 執藝疏는 大臣을 제외한 言官이 아닌 官원이 올리던 상소였으며, 儒生疏는 官원이 아닌 儒生들이 올리던 상소였고, 草莽疏는 儒賢이 올리던 상소였기 때문에 大臣의 신분으로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 외의 내용은 대신 신분으로 차자를 올릴 수 있었다. 玉堂과 臺諫은 私的인 내용을 劄子로 올릴 수 없고 公的인 사안을 아될 때에 劄子를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玉堂과 臺諫의 劄子は 時事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과 國王의 求言에 부응하여 進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옥당은 避嫌한 대간을 處置할 때에도 차자를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上疏와 劄子の 형식 및 분류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두 가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하나는 大臣이 私的인 내용이나 公的인 내용을 막론하고 上疏를 사용할 수도 있고 劄子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면 그 사용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편의에 따라 上疏를 올리기도 하고 劄子를 올리기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용기준이 있었던 것인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또 하나는 劄子를 사용할 수 있었던 官원의 범위를 사실상 大臣·玉堂·臺諫으로 한정한다면 그 이외의 官원들이 劄子를 올린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大臣·玉堂·臺諫 이외에는 劄子를 올린 官원이 드물기는 하지만, 史料에 그들의 劄子が 기록되어 있는 이상 그들이 劄子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밝히지 못하였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숙제로 남겨놓는다. 그 외에 上疏와 劄子에 대한 國王의 批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批答은 國王문서의 일종으로 上疏와 劄子は 물론이고 그 이외의 문서에 대해 國王이 答변할 때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長銜, 單銜, 辭職, 致仕, 乞郡, 徑出, 引嫌, 草莽, 草土, 負罪, 言事, 應旨, 執藝, 儒生, 縣道

투고일(2018. 2. 23), 심사시작일(2018. 3. 6), 심사완료일(2018. 3. 20)

<Abstract>

Format and Classification of the Sangso and Chaja

Lee, Kang-Wook *

The Sangso and Chaja are documents that were used by the government official to express political opinions and personal opinions to the king. The documents were considered private in that those documents were used to convey the opinions of the individuals to the king. The Sangso began to be used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was used throughout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The Chaja began to be confirmed from the Goryeo Dynasty, but it has been used in earnest since the Joseon Dynasty. Since the Sangso and Chaja were the main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king and government officials, it seems that the nobleman of the Joseon Dynasty learned style and formality through 公車類覽, a reference book of Sangso and Chaja.

The provisions of the texts of the Sangso and Chaja are not confirmed until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Among them, the document form of the Sangso and Chaja, prescribed in the book, 典律通補 authored by 具允明 during the era of King Jung-jo, is classified as introduction, body and closing as follows.

The Sangso wrote job title with official ranking title, full name, conventional phrase in the introduction, and wrote 伏以 in the body in the order of the preface, body, and closing. At the end, era name with year, month and date, job title, family name were written followed by signature.

The Chaja wrote job title and full name in the introduction but did not write conventional phrase, different from the Sangso. In the body, 伏以 was written followed by preface, body, and closing. At the end, era name with year, month and date were written without job title and family name. Among them, the preface was limited in the scope and dura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s for use.

According to whether the writer is singular or plural, the Sangso was divided into a

* Institute for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of Korea.

single Sangso and a combined Sangso, and depending on the contents, a private Sangso and a public Sangso.

In the case of private Sangso, there is a resignation Sangso when a government official resigns from the public post. There is also a retirement Sangso when an officer resigns from the public post and retires from the political circle. There is also 乞郡疏 when an officer of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sks for the appointment of the head of the local office to take care of parents in the country. There is also 徑出疏 when an officer leaves the palace door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king. There is also 引嫌疏 when an officer cannot hold the position due to public criticism and accusation of other incidents. There is also 草莽疏 when a Confucian scholar, who is not in the political circle, writes 草莽臣 without the official title. There is also 草土疏 when an officer is in the period of mourning due to parent's death. There is also 負罪疏 when a present or former officer, committed a crime or accused of crimes, writes a letter without the job title at the beginning.

In the case of public Sangso, there is 言事疏 when a public officer writes his opinion on political issues. There is also 應旨疏 when a former or present officer or Confucian scholar writes a letter to give advice, living up to the King's expectation. There is also 執藝疏 when an official except 言官 writes a letter to the king in relation to his duty. There is also 儒生疏 when a Confucian scholar writes a letter. In addition, there is also 縣道疏 when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countryside writes a letter through the residing prefecture and province.

It was also possible to divide the Chaja into singular Chaja or combined Chaja according to the writer, as in the case of Sangso. In the case of Chaja, the scope was limited compared to the Sangso, thus, only 大臣 and the King's father-in-law, 臺諫 and 玉堂 could write a letter.

A 大臣 was allowed to mention private matters such as resignation, retirement, self-reproach, and public matters such as current affair, answer to the king's request, etc. In addition, the 大臣 was allowed to write a Chaja in the name of 草土臣 or 負罪臣 through prefecture and province. 玉堂 was not allowed to write a Chaja in private matters but only allowed to write public matters such as current affair, answer to the king's request, 處置, etc. 臺諫, as in the case of 玉堂, was not allowed to write a

Chaja on private matters and was allowed to write public matters such as current affair, answer to the king's request, etc.

Key Words : Job title with official ranking title, Job title, retirement, geolgun, gyeongchul, inhyum, chomang, choto, bujoe, eonsa, eungji, jipye, Confucian scholar, county-province